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집단과 외집단 범죄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 일상활동이론과 112신고를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윤 창 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집단과 외집단 범죄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 일상활동이론과 112신고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고 길 곤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윤 창 준

윤창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전 소 희 (인)

부위원장 이 석 원 (인)

위 원 고 길 곤 (인)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던 시기에 범죄 양상의 변화를 내집단과 외집단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범죄 양상이 변하였을 것이란 언론보도와 세간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 해외에서는 자택대기 명령(stay at home order) 실시 전후의 단기적 범죄 양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 한 편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범죄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던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112신고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을 상황을 가정하여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12신고 접수 현황을 예측하였다. 이를 실제 관측된 112신고 접수자료와 비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패널 데이터인 2016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국 광역시도별 112신고 접수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짐단 범죄로 분류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예측치보다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의 증감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인(예 : ‘정인이 사건’ 등)들이 고려되지 못한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외집단 범죄는 신고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먼저, 주거침입과 사기 신고는 예측치보다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다. 주거침입 신고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영향에 대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주거침입 신고의 변화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예를들어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주거침입 신고의 대부분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전제로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증가 등이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사기 신고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신고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 비

대면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각종 피싱범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폭력, 절도, 재물손괴 신고의 경우 예측치보다 적은 신고가 접수되었다. 재물손괴 신고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재물손괴가 외집단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감소하여 외집단과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폭력과 절도 신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수 중 가장 강도가 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계(폭력 신고의 경우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가능 조치, 절도 신고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1단계, 5단계 체계의 2단계와 2.5단계)의 영향은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외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폭력 신고의 경우 사적모임 5인 이하 가능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영업자제 권고 조치, 절도 신고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2단계, 5단계 체계의 1단계와 1.5단계, 사적모임 9인 이하 5인 이상 가능 조치, 사적모임 5인 이하 가능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영업자제 권고 조치)는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영향에 대해 각각의 신고유형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직후거나, 국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영향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 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부의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폭력과 절도의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공간에서 수렴할 가능성이 낮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 4개월간의 범죄 변화를 분석하였다. 비교적 장기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희석되거나, 사람들의 느슨해진 경각심 등의 영향을 측정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전체 기간에 대해 범죄의 변화를 조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함께 활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이 창궐하는 경우 경찰이 치안수요의 변화를 보다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12신고, 내집단 범죄, 외집단 범죄, 일상 활동이론
학 번 : 2012-22022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4

제 1 절 이론적 논의 ····· 4

1. 관련 범죄이론 : 일상활동이론 ····· 4

2. 일상활동의 변화 :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 5

3. 범죄와 112신고 ····· 18

4. 범죄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 22

5. 내집단과 외집단 ····· 24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4

1. 선행연구 검토 ····· 25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0

제 3 장 연구설계 ····· 30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 30

1. 연구문제 ····· 30

2. 연구의 분석틀 ····· 31

제 2 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33

1. 분석단위 및 데이터 ····· 33

2. 연구방법 ····· 34

제 3 절 측정 ····· 35

1. 연구모형 1 : 2020년 이후 112신고 예측 ····· 35

2. 연구모형 2 : 예측치와 관측치 간 차이 분석 ····· 37

제 4 장 분석결과 ····· 41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 41

1.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 41

2. 연구모형 1의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 45

3. 연구모형 2의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 48
제 2 절 예측모델링 및 예측결과 ····· 48
1. 예측모델링 ····· 48
2. 예측결과 ····· 51
제 3 절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분석 결과 ····· 54

제 5 장 결론 ····· 58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58
제 2 절 연구결과 해석 ····· 59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 63

참고문헌 ····· 67
부 록 ····· 80
Abstract ····· 81

표 목 차

[표 2- 1]「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주요 메시지 … 6
[표 2- 2] 3단계 체계 거리두기 단계 …… 7
[표 2- 3] 3단계 체계의 2단계 및 더욱 강화된 조치 …… 7
[표 2- 4] 5단계 체계의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 9
[표 2- 5] 4단계 체계의 기준 및 주요 방역수칙 …… 12
[표 2- 6] 팬데믹 기간 동안 이동성 변화 지수 …… 15
[표 2- 7] Meta의 팬데믹 기간 동안 이동성 지수 변화 …. 17
[표 2- 8] 112신고 유형 …… 19
[표 2- 9] 112신고 처리 체계 …… 20
[표 2-10] 112신고 유형 분류 …… 20
[표 2-11] 선행연구 정리 …… 28
[표 3- 1] 통제변수 정리 …… 36
[표 3- 2] 2020년 기준 Google의 주거지 이동성 변화 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 38
[표 3- 3] 2020년 기준 SKT 이용자 이동량 …… 39
[표 3- 4] 더미변수 분류 기준 …… 39
[표 3- 5] 더미변수 정리 …… 41
[표 4- 1]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기술통계 …… 42
[표 4- 2] 폭력·절도 신고 기술통계 …… 43
[표 4- 3] 재물손괴·사기 신고 기술통계 …… 44
[표 4- 4] 주거침입 신고 기술통계 …… 45
[표 4- 5] 등록외국인 기술통계 …… 45
[표 4- 6] 고령인구·청소년 인구 기술통계 …… 46
[표 4- 7] 기초생활 수급자·실업자 기술통계 …… 47
[표 4- 8] 총전입·총전출 기술통계 …… 47
[표 4- 9] 거리두기 강도·확진자 기술통계 …… 48
[표 4-10] 예측모델링 결과 …… 50
[표 4-11] 예측결과 …… 54
[표 4-12]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분석 결과 …… 57

[표 5- 1] 가정폭력 관련 여성가족부 통계 ····· 65

그 림 목 차

[그림 2-1] 팬데믹 기간 동안 이동성 변화 시각화 ····· 16
[그림 2-2] 서울시 주거 및 직장인구 상위지역의 생활인구 변화(2020년 1~3월) ····· 18
[그림 3-1] 연구 분석틀 ····· 33
[그림 4-1]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추이 ····· 42
[그림 4-2] 폭력·절도 신고 추이 ····· 43
[그림 4-3] 재물손괴·사기 신고 추이 ····· 44
[그림 4-4] 주거침입 신고 추이 ····· 45
[그림 4-5] 가정폭력·아동학대 관측치·예측치 비교 ····· 51
[그림 4-6] 사기·주거침입 관측치·예측치 비교 ····· 52
[그림 4-7] 재물손괴 관측치·예측치 비교 ····· 52
[그림 4-8] 절도·폭력 관측치·예측치 비교 ····· 5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어느 덧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한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각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조치 등을 통해 대응(김석영 외, 2021)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는 2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 시작된 1차 대유행, 8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수도권에서 폭발적 증가에 따른 2차 대유행, 1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수도권 중심의 확산에 따른 3차 대유행을 겪었다. 이후 6월 23일부터 12월까지 다시 수도권 중심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5차 대유행을 경험하였다(서울대학교병원, 2022). 이후 4월 18일에는 2020년 3월 이후로 2년 1개월간 유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었다. 4월 25일에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었고,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완화(보건복지부, 2022)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우리나라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K-방역'이라 일컬어지는 방역정책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책브리핑, 2020). 특히 경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과의 접점에서 노력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우한교민에 대한 수송을 자원하고 경찰인재개발원을 격리시설로 제공하였으며, 감염의심자의 소재확인, 확진자 이동동선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 지원, 불시점검·순찰활동을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조치 이행점검 등 방역당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응원을 전개하였다.

한편,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공고한 지위를 유지해오던 관습·관례들을 한 번에 변화시키는 등 사람들의 일상활동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감염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결과, 이커머스 및 모바일

시장, On-Demand 산업이 급격히 성장(Delloitte, 2021)하였으며, 대면·집체 중심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공격을 받으며 그동안 확산되지 못한 재택근무가 가속화(노세리, 2022)되었다. 또한 학교에서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는 등 그동안 사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던 비대면 수업이 공교육에서도 활성화되었다(KDB미래전략 연구소, 2020).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활동의 변화는 범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범죄양상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기간 교통사고와 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이밝음, 2021). 또한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관광상권의 범죄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박세환, 2022).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감소하자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도 감소(서광호, 2021)하였다고 한다.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보도가 계속되었으나,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감염 우려로 인해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들이 중단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 내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범죄가 증가하였다는 보도(구본흥 & 김규철, 2020)가 있었다. UN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가정 안팎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오히려 증가하였다(강명윤, 2021).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실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인과의 교류가 감소함에 따라 외집단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역설적으로 가족 구성원 등 같은 생활 공간 내에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내집단에 의한 범죄 피해의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이라면 경찰을 포함한 정부와 지역사회에서는 범죄유형별로 대응방식을 달리해야할 것이다. 특히, 내집단 범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들의 안전을 실기하지 않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다. 이는 그간 감염병이 치안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코로나19와 같이 전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감염병이 근래에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위력을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 절대 다수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새로운 팬데믹의 가능성을 경고(한재범 & 나현준, 2022)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이 창궐할 때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범죄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2000년 이후 국내에 창궐했던 다른 감염병[1]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장기화 되었으며, 사회적 거

리두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감염병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온 사회가 역사상 가장 큰 실험의 장(Ben Stickle & Marcus Felson, 2020)이 된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한다면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based policing)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국민이 안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전이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소극적 권리에서 국가에 적절한 보호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위험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코로나19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부상하자 전통적 위험에서 벗어나 경제·환경·공동체 안보 등 인간안보의 개념이 재조명되기도 하였다(김창보, 202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는 경찰의 첫 번째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치안정책에 활용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범죄유형을 내집단 범죄와 외집단 범죄로 분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각의 범죄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범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에는 112통계와 범죄통계가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각 시도경찰청별로 접수된 112신고 접수현황으로 한다.

먼저, 범죄통계의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이 있다. 이들 통계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작성·승인하는 범죄통계원표에 근거하고 있다. 범죄통계는 국가기관에 의해 정제되었다는 점에서 정확성이 높은 자료이며, 실제로 발생한 범죄만을 반영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112신고는 범죄통계와 달리 정확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112신고로 곧 범죄 발생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각종 오인신고나 잘못

1)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3년 조류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등(전병율, 2015)

접수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2신고 통계는 양적 규모가 범죄통계와 비교하여 10배가 넘고, 범죄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청이 왜곡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기록된다(노성훈 & 탁종연, 2015). 접수 즉시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112신고 통계가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가진 강력한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12신고 접수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범죄의 변화를 분석해볼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관련 범죄이론 : 일상활동이론

일상활동이론은 인간은 쾌락주의적이며,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를 바탕(T. Ishihara et al, 2020)으로 범죄의 발생과 피해는 사람들의 예측가능하고 반복되는 일상활동 또는 생활유형 패턴의 결과이자 공간적·시간적 특성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론(임하늘 외, 2015)이다.

일상활동이론을 주창한 Cohen & Felson(1979)은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폭력범죄를 유발하는 다양한 조건들(예를들어 고등학교를 마친 도시의 흑인 비율 증가, 실업률 개선, 저소득층 비율 감소 등)이 개선되었음에도 10년간 폭력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역설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범죄자 개인의 특성보다는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 범죄 발생의 3요소로 ①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②범죄의 적합한 대상(suitable targets) ③감시의 부재[2](absence of capable guardians)를 제시하고 이 요소들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수렴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범죄 증감의 원인으로 일상활동의 변화를 주목하여 범죄

2) 이때 감시는 경찰에 의한 감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지인이나 일반시민, 낯선사람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감시자의 역할도 포함된다(Akers 외, 2021).

율의 변화는 일상활동의 변화가 범죄 발생의 3요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잠재적 범죄자와 근접할수록, 범죄에 대한 노출이 높을수록, 범행대상으로서의 매력이 클수록, 보호능력이 낮을수록, 특정 범죄의 특성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임하늘 외, 2015).

Cohen & Felson은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를 '직접 접촉 약탈행위'로 제한하였는데 이후 Felson은 일상활동이론을 '직접 접촉 약탈행위'뿐 아니라 약물·알코올 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으며, 다른 연구자들은 온라인 또는 사이버 범죄에도 적용하기도 하였다(Akers et al, 2021 재구성).

이러한 일상활동이론은 주로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여겨져왔으나, 많은 학자들이 일상활동이론의 관점을 확장하여 범죄가해 행위에도 적용하였다. Osgood et al(1996)에 따르면 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또래친구와의 비구조적인 사회화의 참여 시간과 일탈행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Bernburg & Thorlindsson(2021)은 일상활동이론의 변수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가해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밝혔다(T. Ishihara et al, 2020).

2. 일상활동의 변화 :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의의

보건복지부(2020)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비약물적 통제조치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접촉 가능성을 줄여 감염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확진자 격리, 접촉자 격리, 자가체류 권고, 휴교, 집단시설 등의 출입제한, 군중모임·축제 등의 금지, 지역단위 통행금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었는데, 외출자제(stay at home), 이동통제(travel ban), 학교 폐쇄(school closure), 지역봉쇄(lockdown) 등 다양한 방식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거나 혼합되어 시행되었다(신현재, 2022).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서울시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김범 & 고길곤, 2020)되었으며, 전면적 제한조치·봉쇄(lockdown)가 아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지침을 지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20).

(2)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1)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1차 대유행은 2월 18일 대구·경북지역에서 특정 교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한달 만에 대구·경북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약 8,000명으로 증가하였다(정책브리핑, 2020).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고 이를 4월 19일까지 연장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 표 2-1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관련 주요 메시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 자제

○ **(직장인)**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 **(사업주)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기**

[일부 시설·업종 운영 제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중단**해 주세요"

○ **(대상)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일부**,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그밖에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

○ **(지자체)** 현장점검 하고 방역지침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 발동

○ **(준수사항) 15일간(3.22-4.5)**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출처 : 2020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약

4월말에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발생하자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기존 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신규 확진자 수 등이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는 5월 6일부터「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다(보건복지부, 2020)[3].

< 표 2-2 > 3단계 체계 거리두기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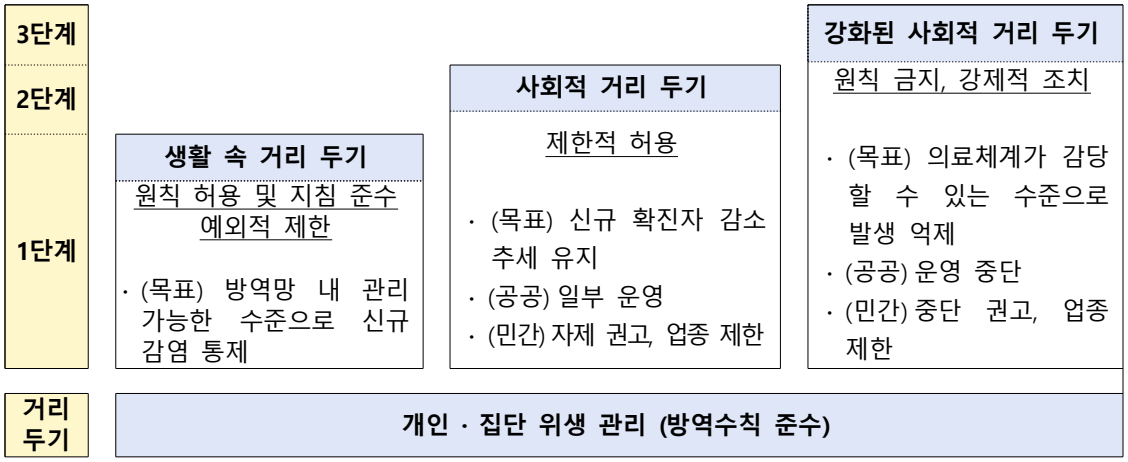

출처 : 2020년 5월 3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차 대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8월 16일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으며. 8월 18일에는 이를 인천으로 확대하였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여 8월 23일부터 2단계 조치를 2주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럼에도 수도권 일일 확진자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함에 따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젊은 층 등 위험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 표2-3 > 3단계 체계의 2단계 및 더욱 강화된 조치

출처 :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이후 8월 전국 2단계 발령 전까지 전국적으로 생활속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으나 광주광역시만 유일하게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2단계로 상향 조치하였다.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조치사항</th></tr>
<tr><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r><td colspan="2">집합·모임·행사</td><td colspan="2">○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td></tr>
<tr><td colspan="2">스포츠 행사</td><td colspan="2">○ 무관중 경기 전환</td></tr>
<tr><td rowspan="4">다중
이용
시설</td><td>공공</td><td colspan="2">○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td></tr>
<tr><td rowspan="3">민간</td><td colspan="2">○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td></tr>
<tr><td>○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td><td>○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td></tr>
<tr><td colspan="2">○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td></tr>
<tr><td colspan="2">학교</td><td>○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8.26~)</td><td>○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td></tr>
<tr><td rowspan="2">기관, 기업</td><td>공공</td><td colspan="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td></tr>
<tr><td>민간</td><td colspan="2">○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td></tr>
</table>

정부에서는 8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8월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하

였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여 2단계로 조정하였다. 이후 추석 명절 인구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9월 28일~10월 11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여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10월 12일, 정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기존 3단계 거리두기 체계가 단계 격상 시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11월 7일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5단계 체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개편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 표2-4 > 5단계 체계의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출처 : 2020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한편, 3차 대유행은 11월에 시작되었다. 수도권과 호남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호남지역은 1.5단계로 격상하였다. 11월 29일 정부는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12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방역대책[4]을 발표하고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때부터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다. 12월 27일 정부는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함에 따라 1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특별 방역대책 기간에 맞추어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4) 5인 이상 사적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을 조치하였다.

2)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현황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핵심조치와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및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였다. 이후 재연장을 거듭하였으며, 2월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21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하였다. 아울러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약 4만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2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였다. 다만 개인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정부는 2월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하였고, 2주간 반복적으로 연장하여 4월 11일까지 유지하였다. 한편,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에 대응하여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4월 9일 정부는 1월 3주차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유지하되,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중앙부처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정부는 봄맞이 사회활동 증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기존의 거리두기 방역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3주간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6월말까지 재연장을 반복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6월 20일에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개편 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적용은 1주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다시 유예하여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기존의 방역조치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들에 비해 개인 방

역은 강화되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데 전반적 조치를 완화하는 것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 때문에 유지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21).

< 표2-5 > 4단계 체계의 기준 및 주요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출처 : 2021년 7월 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부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수도권에 대해서는 4단계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되었으며, 집회도 제한되었다. 또한 학교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학사 일정 변경 준비를 위해 7월 1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기존 4단계 조치 외에도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유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7월 15일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하였다.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에는 2단계, 세종·전북·

전남·경북은 1단계를 적용하였고, 일부 지역에서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5]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과 풍선효과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21).

정부는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였다.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3단계로 격상하되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이후 정부는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을 8월 9일부터 반복적으로 연장하여 10월 3일까지 유지하였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을 확대하여 4단계에서는 6인, 3단계에서는 8인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발표하였으며, 기존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하되,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6]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10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발표되었고,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해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3차례[7]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1단계 조치가 시행되어 4주(운영기간)+2주(평가기간)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유행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11월 29일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이 4주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세가 진전되지 않자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하여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 기준을 전국 4인(당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업종별로 21시 또는 22시까지 제한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

5) 1단계는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6)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며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7) 생업시설(다중 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보건복지부, 2021)

3)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현황

1월부터 5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으며 정부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022년 1월 16일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1월 17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강화조치가 2월 6일까지, 이후 다시 2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이 6인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은 21시에서 22시로 조정하였으며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다시 영업시간 제한이 23시로 완화하였다.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사적모임 인원이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였으며,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다시 사적모임이 8인에서 10인, 영업시간 제한이 23시에서 24시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4월 18일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되었다(보건복지부, 2022).

(3)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활동에 미친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사회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 중 일상활동의 변화가 가장 대표적인 영향일 것이며 이는 인구이동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인구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전출인구와 전입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인구이동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며 전출·전입 현황을 제외한 다른 변화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례없는 현상이 인구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고, 빅데이터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의 실시간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Google에서 발간하는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는 장소 유형을 ① 소매점·오락시설 ② 식품점·약국 ③ 공원 ④ 대중교통 정류장 ⑤ 직장 ⑥ 주거지로 분류[8]하였다. 2020년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5주간 기간의 중앙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하여 각 장소에서 인구이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여준다(Google, 2022).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이동성 변화를 살펴보면 소매점·오락시설과 대중교통

8) 주거지 항목은 주거지에 머문 평균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고, 다른 항목은 방문자 변화로 측정하였다. Google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미 평일에도 주거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변동폭이 크지 않음

정류장, 직장에서는 이동량이 감소하였고, 식품점·약국과 공원의 이동량과 주거지에서의 이동시간[9]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추론해볼 수 있다. 사람들은 외식이나 여가활동, 직업활동 등을 위한 야외활동이 감소하였고, 대신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식 대신에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또한 야외활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밀집도가 낮은 공원 등에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준값으로 설정된 2020년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기간이 동계기간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통상 동계기간에는 야외활동이 감소하였다가 기온이 상승하면서 다시 증가한다. 그러나 Google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소매점·오락시설의 경우 기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하계기간까지의 구간에서 이동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정류장과 직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절과 상관없이 대부분 일관되게 이동량이 감소하였다[10]. 이와 반대로 주거지에서 머문 시간은 전 기간에서 증가하였다.

< 표2-6 > 팬데믹 기간 동안 이동성 변화 지수

구분	소매점·오락시설	식품점·약국	공원	대중교통 정류장	직장	주거지
2020년 이동성 변화						
2월	-19.67	-6.13	-10.67	-16.53	-4.67	6.73
3월	-22.81	-3.13	17.23	-19.97	-8.10	8.13
4월	-13.03	4.80	36.37	-11.63	-8.27	5.97
5월	-4.71	10.90	43.74	-5.19	-6.74	3.45
6월	-4.70	9.03	34.70	-4.67	-1.83	1.57
7월	-5.48	5.94	33.16	-7.45	-3.00	1.87
8월	-11.32	6.68	28.81	-13.48	-13.48	4.48
9월	-17.97	11.20	30.83	-11.03	-10.40	4.27
10월	-10.29	9.16	53.03	1.19	-9.39	1.90
11월	-12.57	6.10	15.20	-1.30	-1.87	1.70
12월	-23.10	4.81	-4.19	-17.10	-12.65	8.71
평균	-13.24	5.40	25.29	-9.74	-7.31	4.43

9) Google에 따르면 다른 장소유형은 총 방문자 변화를 측정하는 반면, 주거지는 주거지에 머문 평균 시간으로 측정(Google, 2022)

10) 이와 반면에, 공원에서는 대폭 증가하였다. Google의 설명에 따르면 '공원'은 시골의 일반적인 야외 공간이 아닌 공식적인 공원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예시로 공공정원, 성, 국립공원, 캠핑장, 전망대를 의미한다(Google, 2022). Google의 기준값이 야외활동이 감소하는 동계기간이라는 점과 공식적인 공원에서의 이동량만을 집계하였다는 점에서 공원에서의 이동량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만으로 전체 야외활동이 증가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구분	소매점·오락시설	식품점·약국	공원	대중교통 정류장	직장	주거지
2021년 이동성 변화						
1월	-22.58	3.42	-7.13	-21.39	-15.19	10.03
2월	-8.89	15.79	12.61	-13.32	-14.43	6.36
3월	-1.39	18.90	24.74	-6.58	-4.94	2.84
4월	0.37	22.90	41.90	-2.43	-1.57	1.40
5월	3.42	26.26	47.61	-0.90	-5.55	2.29
6월	8.47	26.00	50.80	2.97	1.90	0.83
7월	1.71	24.26	35.52	-5.87	-3.90	3.81
8월	0.77	25.61	42.29	-7.35	-9.23	5.45
9월	6.07	32.10	54.17	-1.77	-7.97	3.37
10월	11.32	26.65	55.81	1.10	-2.06	2.10
11월	12.53	23.70	40.10	2.63	1.77	0.87
12월	5.13	21.32	16.71	-5.84	-0.77	4.03
평균	-5.91	13.82	29.94	-7.32	-6.23	4.02
2022년 이동성 변화						
1월	1.65	24.81	17.03	-9.03	-8.06	5.87
2월	-3.29	13.96	16.68	-15.29	-10.07	7.46
3월	-10.55	10.23	6.97	-21.48	-4.90	6.29
4월	0.17	15.37	29.70	-11.00	4.87	0.67
평균	-5.51	14.13	28.24	-8.27	-6.00	4.17

출처 : Google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2022)

< 그림2-1 > 팬데믹 기간 동안 이동성 변화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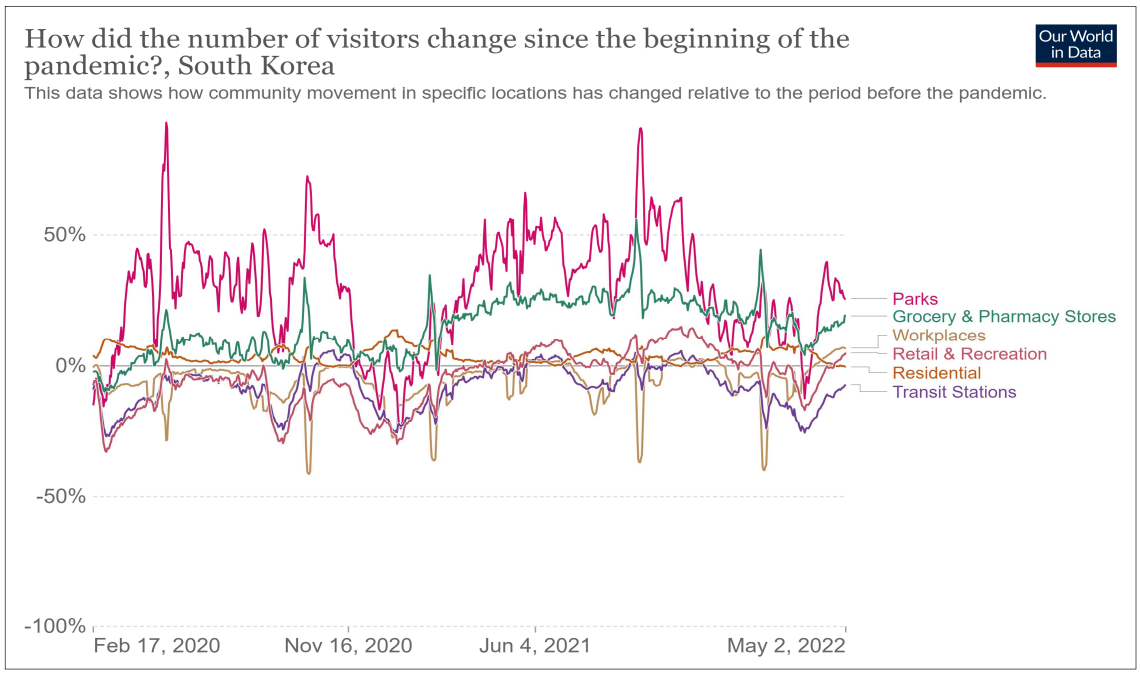

출처 : our world in data(2022)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은 Meta가 2020년도 1월과 2월을 기준값으로 설정하여 비교한 월별 지역 이동성 지수에서도 나타난다. 심윤정 외(2020)는 Meta의 이동성 지수를 활용하여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이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동 비율(change in movement)은 기준값과 비교하여 3월과 4월에는 감소하다가 6월과 7월에는 다시 기준값보다 약간 상회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증폭된 8월부터 다시 이동성이 감소하고 10월에서야 기준값을 넘었다. 또한 주거지 칩거자 비율(those that are put at home)은 기준값에 비해 3월에 8% 증가한 뒤 7월까지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기준값을 상회하였고, 다시 8월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Google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에서 나타난 변화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일상활동의 변화를 추론해볼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증감의 변화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이동을 자제하고, 더욱 많은 시간을 주거지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2-7 > Meta의 팬데믹 기간 동안 이동성 지수 변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
이용자 이동변동	0.0	0.0	-7.2	-3.1	-0.1	0.9	1.3	-2.2	-2.0	1.4	-1.3
주거지 칩거 변동	0.0	0.0	8.4	7.5	6.9	6.2	6.0	8.0	8.4	6.7	5.4

출처 : 심윤정 외(2020, 재구성)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단기적인 변화 분석에서도 주거지의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직장에서의 생활인구는 감소하였다고 나타났다. 지상훈(2020)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초기 3개월간(2020년 1월~3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생활인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2월부터 직장인구 상위 지역에서 생활인구가 줄어들었고,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감소세 역시 강화되었다. 이와 반대로 주거인구가 높은 지역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생활인구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 그림2-2 > 서울시 주거 및 직장인구 상위지역의 생활인구 변화(2020년 1~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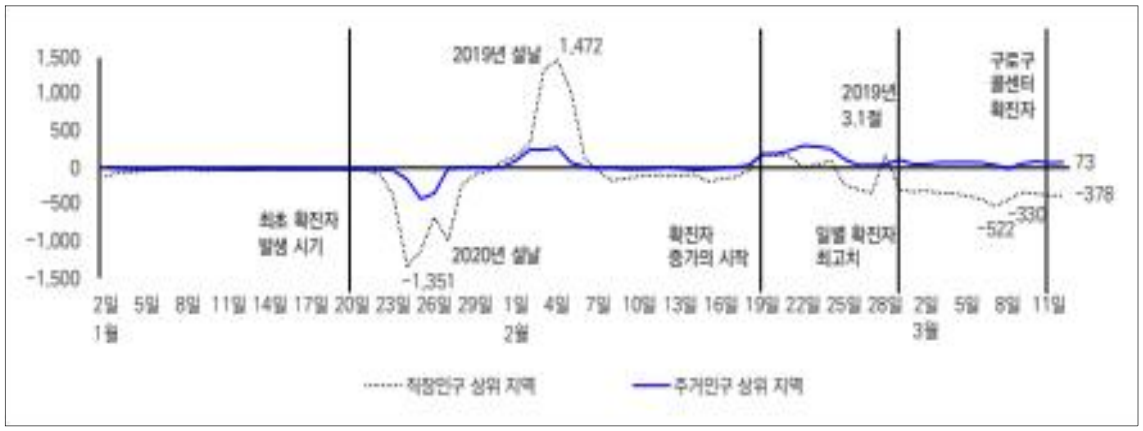

출처 : 지상훈(2020)

위와 같이 빅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이동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의 일상활동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주거지에 머물렀고, 야외활동은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범죄와 112신고

(1) 경찰의 112신고 시스템

경찰의 112접수 매뉴얼에 따르면, 112신고 시스템이란 'C3 개념'(Command-Control-Communication)을 적용하여 112신고를 통해 각종 범죄나 인명구조 및 경찰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을 말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경찰력을 신속히 현장에 배치하여 초동대응하고, 현장경찰관과 소통하여 지휘·통제한다(경찰청, 2021년).

112신고는 전화신고뿐만 아니라 문자,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기존 전체 신고의 81.9%가량[11]이 전화신고를 통해 접수되고 있다.

11) 2022년 상반기 접수건수 8,990,995건 중 7,363,764건이 전화로 접수

< 표2-8 > 112신고 유형

구분	유형별	특징
전화 신고	112	신고자가 112로 전화를 걸어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접수
	112(SOS)	원터치 SOS 가입자가 112로 전화를 거는 경우
	112(방범)	지구대 등에서 '방범대상업소'로 등록한 신고자가 112로 전화
	112 (신변보호)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전화로 신고한 경우,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 워치를 이용하여 신고 한 경우
문자 신고	SMS접수	신고자가 112에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보낸 경우
	112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12앱'을 활용하여 신고한 경우
	나들가게	나들가게(동네 수퍼 중 지정) 계산대(POS)에서 보낸 신고
일반 접수	일반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일반전화나 방문하여 접수
	C/S 접수	112시스템 장애 시 가동시키는 장애 대응 프로그램에서 자동 입력

출처 : 2021년 112접수 매뉴얼(2021)

경찰 조직 내에서 112신고는 경찰청의 치안상황관리관실, 시도경찰청의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담당한다. 신고자가 112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가 위치한 기지국 관할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게 된다(경찰청, 2021년). 상황요원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발생장소와 신고내용을 입력하고(노성훈 & 탁종연, 2015) 경찰서 간 협업이 필요한 광역사건이나 대형사건은 직접 지령한다. 그 외의 일반사건은 경찰서를 지정하여 해당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지령한다(경찰청, 2021년). 지령을 받은 출동요소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 후 이를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상황요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결 내용 등을 시스템에 입력한다(노성훈 & 탁종연, 2015).

< 표2-9 > 112신고 처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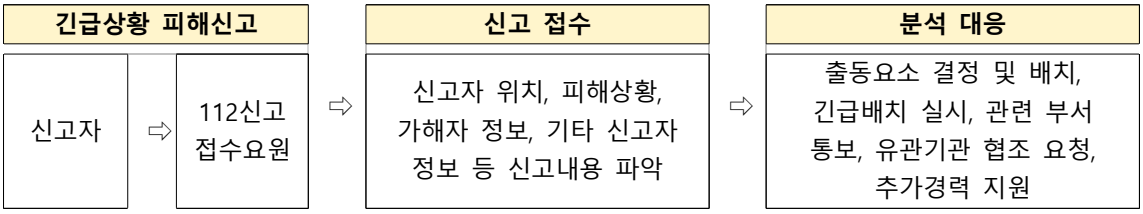

출처 : 2021년 112접수 매뉴얼(2021)

경찰에서는 112사건 접수 현황을 6개로 중분류하고 58개로 소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 표2-10 > 112신고 유형 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요범죄 (10종)	살인, 강도, 치기, 절도, 납치감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가정 내), 아동학대(기타), 데이트폭력
기타범죄 (15종)	폭력, 사기, 공갈, 협박, 도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풍속영업, 수배 불심자, 기타 형사범, 스토킹, 학교폭력, 마약류(약물), 피싱사기, 동물학대
질서유지 (8종)	시비, 행패소란, 청소년 비행, 무전취식 승차, 주취자, 보호조치, 위험방지, 기타 경범죄
교통 (6종)	교통사고, 교통불편, 교통위반, 사망·대형사고, 인피도주, 음주운전
기타 경찰업무 (9종)	상담문의, 변사자, 비상벨, 경비업체 요청, 가출 등, 분실습득, FTX, 자살, 실종(실종아동 등)
타기관, 기타 (10종)	내용확인 불가, 화재, 구조요청, 소음, 노점상, 기타·타기관, 서비스 요청, 청탁금지법, 재해·재난, 위험동물

출처 : 2021년 112접수 매뉴얼(2021)

(2) 112신고 데이터의 특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청의 '범죄통계'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 있다. '범죄통계'는 분기별로 발간되며, 경찰 수사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범죄통계원표[12]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범죄분석'은 연 1회 발간되며, '범

죄통계’와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범죄통계원표를 기준으로 집계되나 경찰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나 검찰 등의 통계원표도 함께 집계되는 차이점이 있다.

‘범죄통계’와 ‘범죄분석’ 모두 국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한다는 점에서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으나, 112신고와 비교하여 몇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으로는 즉각적인 범죄의 변화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112신고 통계는 접수 즉시 상황요원의 입력에 따라 집계됨에 따라 일간·주간·월간 단위로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데 반해,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은 수사관이 범죄통계원표를 입력하고 이를 확인·정리하는 작업을 거쳐 발간되기 때문에 실제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통계가 공개되는 시간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공신력이 담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의 변화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은 범죄통계원표를 기준으로 집계되고, 범죄통계원표는 입건된 사건만 기록되기 때문에 입건되지 않은 범죄는 반영되지 못한다. 입건된 사건만 집계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된 사건들만 기록이 되고, 정식으로 접수 되지 않은 범죄는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의 경우 통계 생산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탁종연, 2006). 이에 반해 112신고는 입건여부를 가리지 않고 신고자의 요청이 ‘날 것’ 그대로 기록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양적으로도 나타나는데 2020년 범죄 발생건수는 ‘범죄통계’에 의하면 1,587,866건(경찰청, 2021), ‘범죄분석’에 의하면 1,714,579건(대검찰청, 2021)인데 반해 112신고는 18,296,631건(경찰청, 2021)으로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셋째, ‘범죄통계’나 ‘범죄분석’은 과거에 발생한 범죄만을 포함하지만, 112신고는 과거의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목전에 두거나, 향후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여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노성훈 & 탁종연, 2015).

물론 112신고가 ‘범죄통계’나 ‘범죄분석’보다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다. 범죄 관련 통계와 비교하여 112신고는 접수 즉시 기록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상황을 오판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동일한 신고자가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신고를 한 경우 모두 그대로 통계로 집계된다는 단점이 있다(노성훈 & 탁종연,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요청 사항이 즉시 기록

12) 대검예규(범죄통계 개선)에 따르면, 범죄통계원표는 형사입건한 각 사건에 대하여 원표를 작성(대검찰청, 2015)

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므로 112신고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4. 범죄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그동안 범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여러차례 이루어져 왔다. 주로 인구밀도나 외국인 비율 등 인구학적 측면이나 학력, 가족구성, 복지지출 등 사회경제적 측면, 또는 유흥업소나 도소매업 비중 등 도시환경적인 측면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이창근 & 김의준, 2010). 또한 경찰력의 변화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구(예 : 기광도, 2007 등)가 있다.

이현정 & 최재훈(2019)은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다. 국내 18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의 범죄데이터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설계·분석한 결과 절도는 빈곤, 민족적 이질성, 인구밀도, 청소년 비율의 영향을 받았고, 폭력은 외국인 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는 빈곤, 민족적 이질성, 청소년비율 등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동현(2018)은 수도권 도시를 군집으로 분류하여 군집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범죄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이동이 많은 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그 다음으로 이혼율이나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해체되어 있는 곳에서 빈번하다고 하였다.

강지현(2017)은 전국범죄피해조사[13]를 활용하여 1인가구를 청년·성인·노인가구로 분류하여 범죄피해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인가구는 2인 이상의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높은 피해율을 보였으며, 1인가구 중 청년 1인가구가 높은 피해율을 보였고 노인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보였다.

김상일 & 이태구(2010)은 총범죄 발생에 미치는 인구·사회·공간적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밀도·고령인구·등록 외국인 수가 각각 1% 증가할 때 범죄는 각각 0.08%·0.15%·0.07%가 증가하였다. 사회적 영향요인의 경우 경찰력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세 징수액의 경우 1% 증가할 때 범죄가 0.37%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공간적 특성의 변수 중에서는 풍속 대상업소가 1% 증가할 때 범죄는 0.15% 증가하였고, 학교용지가 1% 증가할 때 범죄는 0.05% 감소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격년 주기로 작성하는 조사통계로서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하였다고 한다.

양진석 & 정일훈(2010)은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여 도시범죄 발생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경제·도시계획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학적 변인의 경우 유동인구와 대졸자비율, 일인당 경찰관수는 총 범죄율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변인은 기초 생활수급자 비율이 총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도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도시계획 변인 중 일인당 유흥업소 수는 강도, 절도, 폭력범죄율과 정의 관계, 용도 혼합도는 절도, 폭력범죄율과 부의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공원 면적비율은 모든 범죄율과 정의 관계, 개발제한구역면적비는 폭력범죄와만 부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석 외(2009)는 마산시를 대상으로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범죄 발생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5대 총범죄율과 절도 범죄율은 노령자 인구비, 재산세, 도소매업 수, 숙박음식업종 수가 유의하였고, 폭력범죄는 인구밀도가 유의하고 범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우석(2009)은 경제불황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11년간(1995년~2005년)의 실업률, 빈부격차, 5대 범죄 발생건수 자료를 ARIMA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실업이 살인, 강도, 단순폭행과 같은 폭력범죄의 동기를 보다 더 극대화하였다. 또한 절도, 강간과 같은 범죄의 경우 범죄기회 요소와 범죄유발 요소를 동시에 자극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성이 미약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동근 외(2007)는 서울시 특정 구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속성 자료를 구축하여 토지이용 행태와 도시범죄 밀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지역이 비주거 지역이나 용도혼합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한 지역이 어떤 용도로 단일한 토지이용 속성을 가지는 경우 보다 혼합된 용도로 사용될 때 범죄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기광도(2007)는 1964부터 2005년까지 전국 단위의 경찰 인력과 범죄 발생건수를 바탕으로 ARIMA분석과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체범죄의 발생률이 경찰력의 증가에 미약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찰력과 범죄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제갈돈 외(1999)는 지난 32년간(1964~1996년) 우리나라의 경찰력 증가(경찰 예산·인력)와 범죄억제(범죄에 관한 변수로는 총범죄와 검거 수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범죄의 증가는 2년 후에 경찰 예산의 증가로 반영되었고, 예산 증가의 효과는 5년 뒤에 경찰인력이 확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인력 확충은 10년이 지난 뒤에 범죄검거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즉, 총범죄 증가에 따

른 정책대응의 효과는 17년이 지난 후에야 범죄 검거에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인 정책효과인 범죄억제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범죄 억제력에 대한 경찰력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황지태(2010)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 치안인력 확대 이후 공식적인 범죄통계상 범죄는 증가하였으나, 범죄피해조사 상의 범죄는 감소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찰력 증가로 범죄인지가 증가된 결과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범죄 기록량은 증가하였으나 범죄피해 조사상의 범죄는 감소하는 이중효과가 발휘되었다고 하였다.

범죄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종합해보면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인구밀도, 등록외국인, 청소년인구, 고령인구, 인구이동량 등 인구학적 요인과 재산세,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요인, 풍속대상업소, 학교면적, 용도 혼합도 등 공간적 요인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력의 영향에 대해서는 효과가 엇갈린다.

5. 내집단과 외집단

사회학적으로 사회집단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미국의 심리학자 Sumner는 소속감을 기준으로 내집단(in group)과 외집단(out group)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원시부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부족 구성원들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집단 이외의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적대감을 느낀다는 점을 착안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내집단은 한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며 '우리 그룹'으로 느끼는 집단이며,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우리 반' 등이 내집단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외집단은 내집단과 반대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배척감이나 적의의 감정을 느끼며 '그들 그룹'으로 느끼는 집단을 의미한다(임다울, 2019). 내집단과 외집단의 분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소속감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유동적이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세계 여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정책 이후 단기적인 범죄 발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 대부분은 코로나19 이전의 범죄 데이터를 활용하여 ARIMA 모형을 통해 봉쇄정책 이후의 범죄를 예측한 뒤 이를 실제 범죄 데이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Scott SM & Gross LJ(2021)는 미국의 대도시와 소도시를 포함한 3개의 도시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의 범죄 감소가 이전 연도의 범죄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자택대기 명령 이후 급격한 범죄의 감소를 보였으며, 특히 이러한 양상은 대인범죄보다는 재산범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다만, 세 도시에 대해 재택 명령이 시행된지 2주간의 시간에 대해서만 분석한 한계가 있어 전 국가적인 범위에서 장기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Abrams & David S.(2021)는 미국 25개 대도시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범죄는 자택대기 명령으로부터 10~14일 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이동량 감소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띤다고 하였다. 전체범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범죄가 자택대기 명령을 전후로 감소하나 도시 간의 감소 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살인과 총격사건 등의 범죄는 자택대기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일부 도시에서는 비주거 침입절도와 자동차 절도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Langton et al(2021)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을 대상으로 14개의 범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범죄(14개 범죄 중 12개)가 봉쇄정책이 실시된 첫 달 동안 단기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다만 봉쇄정책이 완화되면서 다시 범죄는 증가하였지만 이는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의 범죄는 일정기간 동안 이전만큼 증가하지 않았고, 강도와 폭력은 빠른 속도로 다시 증가하였다.

Estévez-Soto, P.,R.(2021)은 코로나19로 멕시코시티의 범죄 패턴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일상활동이론의 관점에서 범죄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일상활동 변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대중교통 이용빈도 변화에 따른 범죄 예측치와 실제 범죄 발생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범죄가 팬데믹 직후 감소하였으며 이동성의 감소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이동성 변화에 따라 예측된 감소가 실제 관측치만큼 크지도 않고 항상 일치하는 것

도 아니어서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요인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Shen, Y., Fu, R. and Noguchi, H(2021)은 일본 아베 정권에서 시행된 자발적 거리두기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력한 봉쇄정책을 즉각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폭력 및 재산범죄 등 전반적인 범죄가 감소하였으며, 이를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0~29세 사이에서는 성폭력이 크게 감소하고 30~59세 사이에서는 폭력 및 재산범죄가 크게 감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령대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Metthew P.J Ashby(2020)는 미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16주 동안 미국의 10개 대도시의 경찰신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초기 몇 주 동안은 경찰신고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일부 도시에서는 교통충돌과 같은 특정 신고 유형이 크게 감소하고, 변사 신고와 같은 일부 신고는 대폭 증가였다는 것을 밝혔다. 다만 10개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일한 결과는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한편, Metthew P.J Ashby는 경찰신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범죄 데이터 변화도 분석하였다. 미국 16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장소나 거주지에서의 '심각한 폭행'(serious assault)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주거침입 절도(residential burglary)가 감소하였고, 비주거 침입 절도(non-residential burglary)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자동차 절도의 경우에는 도시별로 패턴이 다양하였다고 하였다. 경찰신고와 마찬가지로 모든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동일한 패턴은 없었다고 하였다.

Felson et al(2020)은 사람들의 일상활동에 극적인 변화가 발생했던 2020년 3월 한 달(3월 10일 비상사태 선포, 3월 24일 자택대기 명령 공포 등) 동안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발생한 절도(burglary) 사건을 분석하였다. 다른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면 디트로이트시를 주거용 토지 사용이 지배적인 지역과 주거·상업지역 등이 혼합된 토지 지역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절도는 주거지역에서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용도혼합 지역에서는 증가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Eric Halford et al(2020)은 영국의 일부 지역의 범죄율을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 23일 봉쇄정책 1주일 후부터 총범죄는 41% 감소하였고, 상점절도는 62%, 절도는 52%, 가정폭력은 45%, 차량 내 절도는 43%, 폭행은 36%, 주거침입 절도(burglary dwelling)는 25%, 비주거침입 절도(burglary non-dwelling)는 25% 감소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범죄 감소뿐만 아니라 '이동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Google의 Covid-19 mobility report를 활용하여 범죄와 유동인구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상점 절도와 다른 절도는 상점 영역에서의 이동

성 감소에 즉각 반응하였으나 비탄력적이고, 주거침입 절도는 주거지역 이동성 증가에 탄력적이었으며, 폭행은 직장으로의 이동성 감소에 비탄력적이었으나 즉각 반응한다는 것을 밝혔다.

특정 범죄에 대한 것은 주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Rennie Naidoo(2020)는 코로나19로 사이버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교류에 대한 욕구, 원격근무의 확산, 실업률의 증가, 구제 펀드에 대한 이용가능성, 봉쇄정책으로 인한 오락·레저에 대한 욕구 등 상황적 요인들을 악용하여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George Mohler et al(2020)은 LA와 인디애나 경찰국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후를 분석한 결과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개인 공간·재산에 대한 보호의 증가로 절도·강도와 같은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 명령과 같은 조치가 사람들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그 결과 가정폭력이 증가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은혜 외(2022)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치안사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를 읍면동 수준에서의 범죄 발생등급 분포를 분석하였다. 전역적·국지적 공간자기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범죄유형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거나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강도와 폭력범죄의 발생등급이 상승하였는데, 강도의 경우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증가하고, 폭력범죄의 경우 감염병 유행 시기의 사회혼란과 불안이 폭력범죄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오세연 & 김학범(2021)은 최근 3년간 범죄와 2020년 범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감염병 초기 유행단계에서는 전체범죄가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기반 사기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였고, 감염병 후반기에는 경기침체, 실업이 이어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 불법 사행성 게임범죄가 증가하였다고 하며, 시기별 맞춤형 범죄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명우(2021)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사이버범죄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일상활동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코로나19와 방역대책으로 사이버범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커졌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일상활동이론의 요인 중 적당한 대상과 감시의 부재 요인이 사이버범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임형진 & 김정림(2020)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112신고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7

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월별 112신고 데이터에 대해 시계열 그래프를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 전체범죄는 '약한 감소', 강도범죄는 '약한 증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는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박한호(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명령, 재택근무 등과 같은 일상활동의 변화는 범죄의 기회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며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증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경찰청·대검찰청 등에서 발간하는 공식적인 범죄통계가 아직 발간되지 않은 관계로 외국 데이터와 언론보도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봉쇄정책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이후 범죄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감소하고 봉쇄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증가하나, 범죄 유형이나 연구가 실시된 지역에 따라 양상은 다양하였다.

< 표2-11 >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분석자료	분석방법	연구대상		주요결과
			시간	장소	
Shelby M. Scott & Louis J. Gross	범죄 데이터	T-test	2020. 1월~2020. 4월	미국 3개 도시	자택대기명령 조치 이후 범죄는 일관되게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대인간 범죄보다는 재산범죄에서 더욱 두드러졌음
Abrams & David S	범죄 데이터	이중차분 회귀분석	2020. 3월~2020. 4월	미국 25개 대도시	전체범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가 자택대기명력에 앞서 감소하였음, 다만 살인과 총격사건은 감소하지 않았고, 비주거용 강도와 자동차 절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도시가 있었음
Samuel Langton et al	범죄 데이터	ARIMA 모형	2020. 3월~ 2020. 8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대부분의 범죄 유형은 봉쇄정책이 실시된 첫달 동안 급격히 감소, 봉쇄정책이 완화하면서 다시 증가하였으나 유형별로 증가 양상이 다름
Estévez-Soto & P.,R.	범죄 데이터	ARIMA 모형 / 회귀분석	2020. 2월말~ 2020. 5월말	멕시코 멕시코시티	대부분의 범죄가 팬데믹 직후 감소하였고, 이동성 감소는 이러한 변화의 일부를 설명할 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음
Yichen SHEN et al	범죄 데이터	이중차분	2020. 4월~ 2020. 5월	일본 전역	팬데믹 기간 동안 살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하였으며, 연령별 감소 폭이 다른 것으로 보아 락다운이 연령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밝힘

연구자	분석자료	분석방법	연구대상		주요결과
			시간	장소	
Metthew P.J Ashby	경찰신고 데이터	SARIMA 모형	2020. 1. 20.~2020. 5. 10.	미국 10개 도시	팬데믹 초기에는 경찰신고가 감소하였으나, 10개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없음
	범죄 데이터	SARIMA 모형	2020. 1. 13.~2020. 5. 4.	미국 16개 도시	16개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없음
Felson et al	범죄 데이터 중 절도	대상지역을 블록화 후, 발생건수 단순 비교	2020. 3월	미국 디트로이트시	주거지역에서는 절도가 증가하지 않았으나, 주거·상업 혼합지역에서는 증가
Eric Halford et al	범죄 데이터	ARIMA 모형	2020. 2월말~ 2020. 4월초	영국 전역	2020. 3월말 봉쇄정책 1주일 후부터 총범죄를 비롯 대부분의 범죄는 감소하였고, 이동량 변화가 각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George Mohler et al	경찰신고 데이터	회귀분석	2020. 1월~ 2020. 4월	미국 LA와 인디애나 폴리스	절도 및 강도와 같은 범죄가 감소하였으나, 가정폭력 등은 증가
이명우	범죄 데이터	단절적 시계열 분석	2020. 1월~2020. 12월	전국	코로나19 시기 사이버범죄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요인에는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3요소 중 적당한 대상과 감시의 부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김은혜 외	범죄 데이터	전역·국지적 공간자기상관분석	2020년	경기도	대부분의 범죄유형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했거나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강도와 폭력범죄의 발생등급은 상승
오세연 & 김학범	범죄 데이터	분기별 비교	2020년	전국	감염병 초기 전체범죄 감소, 온라인 기반 사기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 / 감염병 후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불법 사행성 게임범죄 증가
임형진 & 김정림	112신고 데이터	시계열 그래프 비교	2020. 1월~2020. 6월	전국	전체범죄는 '약한 감소', 강도범죄는 '약한 증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는 '감소'하였음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초기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중에서도 자택대기 명령 조치 전 후의 범죄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각 범죄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단기적으로 봉쇄정책 등에 범죄가 급감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기간부터 해제된 기간까지 전체 기간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구가 각국의 경찰제도의 다양성과 데이터 공개 정책의 차이에 따라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해외 연구와 달리 국내 연구의 경우 단순 수치 비교 외에 심도 있는 통계분석을 거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각 사회의 미시적·거시적 양상에 따라 범죄 양상도 달리 나타나는 만큼, 해외 연구결과를 그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범죄 통계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전체 기간에 대해 전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보다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범죄 관련 데이터 중 가장 대표적인 통계인 112 신고 접수현황에 주목하여 코로나19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볼 것이다. 특히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사람들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함에 따라 각종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실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정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렸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112신고 유형을 내집단에 의한 범죄와 외집단에 의한 범죄로 나누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더욱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와 내용에 따라 범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다. 코로나19의 위험과 확산 정도에 따라 사적모임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시기별로 달리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순응과 별개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집단 범죄와 외집단 범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람들의 일상활동의 변화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특히 그 영향은 내집단에 의한 범죄와 외집단에 의한 범죄가 각각 다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동량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이 주거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거나, 주거지역의 생활인구가 늘어났다. 이에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수렴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내집단에 의한 범죄는 증가[14]할 수 있다. 112신고 소분

14) 사회집단은 본 연구의 내집단과 외집단 외에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 중 Cooley는 1차집

류 중 내집단에 의한 범죄인 가정폭력과 가정 내 아동학대의 변화를 분석[15]할 것이다.

가설 1-1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폭력 신고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학대[16] 신고는 증가할 것이다.

내집단에 의한 범죄와 달리 외집단에 의한 범죄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외집단이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로 인식하는 집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함에 따라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공간에 수렴할 가능성은 감소하므로 외집단 범죄는 감소한다고 추정하였다.

112신고 소분류 58종 중 외집단 범죄에 대해서는 절도, 재물손괴, 폭력, 주거침입, 사기 등 신고유형 5종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소분류 58종 중 51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① '기타 경찰업무'(9종)와 '타기관, 기타'(10종) 신고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외하였다. ② '교통'(6종), '질서유지'(8종), 살인, 성폭력, 도박, 아동학대(기타), 마약류, 수배 불심자, 기타 형사범, 학교폭력, 풍속영업, 동물학대 신고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③ 112신고 발생건수가 매우 적은 범죄(전국적으로 월평균 1,000건 이하)를 제외하였다[17]. ④ 다른 범죄 유형과 달리 경찰에서 신고항목을 최근에 신설하여 시간적 기준을 통일할 수 없는 범죄[18]는 제외하였다.

단과 2차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차집단의 핵심기능은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 본성을 함양하거나 사회적 자아의 형성이라는 점에서(차조일 & 박선웅, 2012) 가족·친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2차집단은 법적인 관계나 계약 관계 등을 통해 목적을 가지고 맺는 공식집단이나 직업집단 등을 의미(한겨레, 2009)한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1차집단에 의한 범죄로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외집단 범죄로 분류한 절도·재물손괴·폭력·주거침입·사기 범죄를 2차집단에 의한 범죄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1차집단과 2차집단으로 분류하지 않고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5) 112신고 소분류 중 가정폭력과 가정 내 아동학대 외에 데이트폭력도 내집단에 의한 범죄에 해당되나, 다른 소분류 범죄와 달리 경찰청에서는 데이트폭력을 2018년부터 항목을 신설하여 통계를 관리하여 오고 있어 통계분석의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데이트폭력은 가설에서 제외하였다.

16) 경찰은 아동학대를 가해자를 기준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와 '기타 아동학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가족구성원(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해행위'로 정의하고, 기타 아동학대는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사람(보육교사 등)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해행위'로 정의(경찰청, 2021)하는데 본 연구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아동학대로 한정하였다.

17) 강도, 치기, 납치감금, 공갈, 협박

18)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싱사기가 해당되나, 스토킹, 데이트폭력만 제외하고 피싱사기는 사기죄에

가설 2-1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폭력 신고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2-2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절도 신고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2-3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물손괴 신고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2-4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거침입 신고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2-5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기 신고는 감소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분석틀을 제시할 수 있다.

< 그림3-1 > 연구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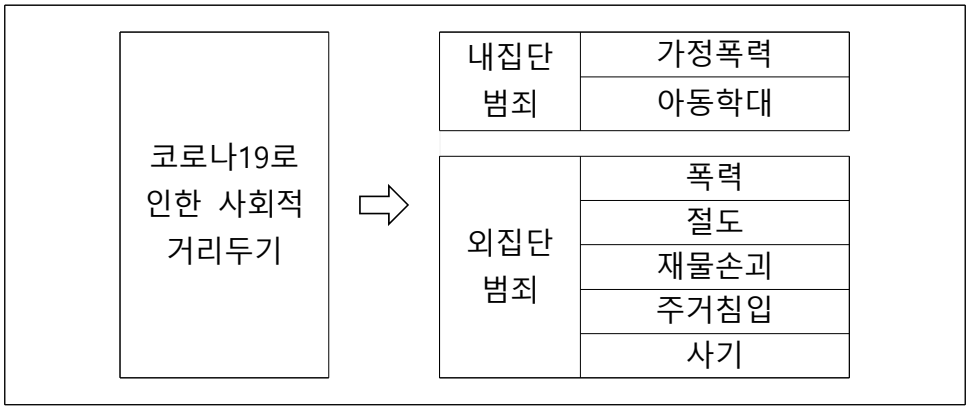

제 2 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분석단위 및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대부분 전국단위로 시행되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확진자가 폭증하였던 수도권 지역 등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였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여 조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미친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포함하여 분석한다.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각 시도경찰청별로 집계된 월별 112신고 접수 데이터이다. 2016년 1월부터 접수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2015년의 경우 5월에 메르스가 창궐하여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38명이 사망하는 등 감염병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 이전의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2018년 9월에 2차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는데, 38일만인 10월 16일에 종료되었고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112신고 접수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112신고 접수 자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18개 시도경찰청의 횡단면 데이터와 2016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64개월의 종단면 데이터가 결합 된 패널데이터이다. 선행연구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초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짧게는 몇주부터 길게는 6개월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작되고 해제되었던 전 기간의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또한 각국의 경찰제도의 차이와 데이터 관리 방법·근거 법령 등의 차이로 인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시도경찰청의 112신고 접수 데이터와 광역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활용한다는 강점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연구모형 1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구성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112신고 접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112신고를 예측할 것이다.

$$\hat{Y}_t = \beta_0 + \beta_1 \text{월} + \beta_2 \text{월}^2 + \beta_3 \text{연도} + \beta_4 \text{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총인구, 등록외국인, 고령인구, 청소년 인구전입인구,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자, 지역 더미변수 벡터를 나타냄)

연구모형 2에서는 위의 회귀식을 통해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112신고를 예측하고 실제로 관측된 112신고 데이터와 비교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할 것이다.

$$Y_{tmr} - \hat{Y}_{tmr} = \beta_0 + \beta_1 월 + \beta_2 월^2 + \beta_3 연도 + \beta_4 사회적\ 거리두기 + \beta_5 코로나19\ 확산도 + \beta_6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지역 더미변수 벡터를 나타냄)

(t = 연도, = 월, r = 광역자치단체)

예측치와 관측치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장기간 폭우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었을 수 있다. 또한 정책 시행과는 별개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였을 수도 있다. 특정 사건으로 특정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져 실제 범죄 발생과는 무관하게 신고량이 급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회귀식을 단순화하여 구성한 이유는 코로나19 첫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4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없다고 보았으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전례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제 3 절 측정

1. 연구모형 1 : 2020년 이후 112신고 예측

(1) 결과변수

종속변수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발생하였을 112신고 예측치이며,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구 1만명당 112신고 건수로 변환하여 분석할 것이다.

(2) 예측변수

회귀식의 예측변수로 월변수와 월^{2}변수를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112신고가 전반적으로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2월부터 7~8월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등 계절성을 띠기 때문이다. 연도변수를 포함한 것은 특정 신고 유형의 경우 사회적 인식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범죄의 진화·퇴보 등으로 매년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3) 통제변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도 밝혔듯 범죄의 영향요인에는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공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구에서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 중 월단위로 공식 집계되는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였다. 공간적 요인의 경우에는 월단위로는 집계되지 않을뿐더러 공간적 요인의 특성 상 월별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경찰력에 대한 영향은 공간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월단위로 집계되지 않고, 경찰력과 범죄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 표3-1 > 통제변수 정리

분류	통제변수
인구학적 요인[19)]	인구 1만명 당 총인구·등록외국인·고령인구·청소년 인구·전입인구(유동인구)[20)]
사회경제적 요인[21)]	인구 1만명 당 기초생활 수급자·실업자

19) <출처> 총인구·고령인구·청소년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 등록외국인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 / 전입인구 :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 통계

2. 연구모형 2 : 예측치와 관측치 간 차이 분석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실제로 접수한 112신고량과 예측 회귀식을 통해 도출한 112신고 접수량의 예측치 간 차이이며,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인구 1만명당 수치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예측에 활용된 회귀식에서의 월별 변수, 월^2 변수, 연도별 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수 및 코로나19 확산도 변수이다. 월별 변수와 월^2 변수, 연도별 변수를 포함한 이유는 예측 회귀식에 포함한 이유와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수와 코로나19 확산 변수를 포함시킨 이유는 연구방법에서도 밝혔듯이 종속변수인 치안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무수히 많은 요인을 회귀식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정치와 관측치 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전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였거나 외부활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야외활동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도변수를 추가하였으며 이는 인구 1만명당 확진자 수로 측정할 것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수는 정책의 내용과 강도를 기준으로 1~5로 분류하여 더미변수화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 통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는 이미 세계 여러나라의 연구기관에서 고안[22]하였으며, 최근 행해진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개발한 지표를

---

20) 통상 유동인구는 전입인구와 전출인구로 파악하나,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 전입인구만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부록-1 참고).

21) <출처> 기초생활 수급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 / 실업자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경우[23]도 있었다. 다만, 위의 지표들은 모두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와 통제수준을 측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바로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제한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이다. 이러한 기준이 사람들의 이동성에 미친 영향은 Google의 이동성 변화 지수에서도 나타난다.

< 표3-2 > 2020년 기준 Google의 주거지 이동성 변화 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동성 지수	6.73	8.13	5.97	3.45	1.57	1.87	4.48	4.27	1.90	1.70	8.71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주요 특징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중단 및 영업 자제 권고(3.22~.5.5.)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 없음 (5.6.~8.1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적모임 제한은 없으나 영업시간 제한 (8.16.~10.10.)				사적모임 4인 이하 제한

주 : Google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2022)를 재구성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작될 당시 주거지에서의 즉각적인 이동성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 및 영업자제 권고가 시작된 2020년 3월과 사적모임 4인 이하 제한이 시작된 2020년 12월은 주거지에서의 이동성 지수가 8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 및 영업자제 권고가 해제된 5월에는 주거지에서의 이동성 변화 지수가 3.45로 저하되었다.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부과된 8월에는 다시 주거지에서의 이동성 변화 지수가 4.48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SKT 이용자들의 이동량을 집계한 '통신 모바일 이동이동량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2020년 각 주차별 이동량을 산출한 결과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 및 영업자제 권고가 시작된 2020년 3월과 사적모임 4인 이하 제한이 시작된 2020년 12월은 이동량이 1억건 이하를 기록하였다. 한편,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 및 영업자제 권고가 해제된 5월에는 1억 8백만여건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부과된 8월에는 1억 1천만여건으로 다소 상승하였다.

---

22)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OxCGRT), Deloitte의 코로나19 모니터링 지표 등

23) 신재현(2022), '정책변동 과정과 근거기반 정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OxCGRT)를 Korea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KCGRT)로 재구성

< 표3-3 > 2020년 기준 SKT 이용자의 이동량

	13주차	...	19주차	...	34주차	...	52주차
기간	3.23.~3.29.	...	5.4.~5.10.	...	8.17.~8.23.	...	12.21.~12.27.
이동량	99,568,716		108,533,210		104,680,371		95,961,227

주 : 통신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통계청, 2022) 재구성

따라서 2020년도 이동량을 살펴보면[24]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중 사적모임 제한의 효과가 가장 강력하며, 그 다음으로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없는 경우 순으로 강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더미변수를 나누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내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3-4 > 더미변수 분류 기준

더미변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0	사회적 거리두기 미실시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의 1단계와 1.5단계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의 2단계와 2.5단계
3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가능
4	사적모임 9인 이하 5인 이상 가능
5	사적모임 5인 이하 가능,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영업자제 권고

위의 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지정한 더미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더미변수 1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에서의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5단계 체계에서의 1단계와 1.5단계로 하였다. 이 단계가 실시된 기간에는 대부분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었다. 더미변수 1에 해당

24)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강도에 대해 2021년과 2022년에의 이동량에 대한 고려 없이 2020년도의 이동량으로만 파악하였다. 그 이유는 2020년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 해로서 2021년이나 2022년보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양한 강도의 정책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2020년 5월 6일부터 2020년 8월 15일[25], 2020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이고 비수도권 대부분[26]은 2020년 5월 6일부터 2020년 8월 22일, 2020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31일까지이다.

더미변수 2는 3단계 체제에서의 2단계와 5단계 체계에서의 2단계, 2.5단계로 하였다. 이 기간에는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으나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었다. 더미변수 2에 해당하는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2020년 8월 16일[27]부터 2020년 10월 10일,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이다. 비수도권 대부분은 2020년 8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이다.

더미변수 3부터 5까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사적모임 제한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사적모임 제한은 2020년 12월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비수도권의 환자 수도 증가세에 있었던 시기에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었던 2022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

사적모임 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4인 이하부터 10인 이하 제한까지, 비수도권의 경우 4인 이하부터 12인 이하 제한까지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기별로 달리 실시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더미변수 3은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더미변수 4는 사적모임 9인 이하 5인 이상[28], 더미변수 5는 사적모임 4인 이하가 가능했던 기간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과 영업권고 조치가 실시되었던 2020년 3월 22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도 더미변수 5로 설정하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방역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즉시 단계를 상향하거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더미변수에 해당되는 기간이 각각의 월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경우 해당 월 내에 1주일 이상 시행된 방역 조치 중 가장 엄격한 조치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배정하였다.

위의 기준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각 월의 더미변수는 다음과 같다.

---

25) 인천은 2020년 5월 6일부터 2020년 8월 18일

26)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광주광역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8월 2일까지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였다.

27) 인천은 2020년 8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10일

28) 사적모임을 4인 이하로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6인 또는 8인까지 가능하였던 기간은 3단계로 분류하였다.

< 표3-5 > 더미변수 정리

2020년 월별 더미변수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경기·인천	·		5	5	1	1	1	2	2	2	2	5
광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5	5	1	1	1	2	2	2	1	5
광주			5	5	1	1	2	2	2	2	1	5

2021년 월별 더미변수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광역자치단체	5	5	5	5	5	5	5	5	4	4	3	5

2022년 월별 더미변수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광역자치단체	5	4	4	3	·							

독립변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변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도 변수를 추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책에 의해 강제되기도 하였지만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도 있다.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경우를 반영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도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이는 인구 1만명당 확진자 수로 측정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가정폭력 신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평균 발생건수는 각각 3.36, 3.38, 3.28건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건수인 3.95, 4.22, 3.87, 3.68건보다 적어, 사회적 거리두기 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6년 3.95건에서 2017년 4.22건으로 한차례 증가한 이후 2020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소폭 증가한 이후 2022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에서 연도별 평균 발생건수가 0.2건을 넘지 못하였으나 2020년에는 0.2건을 초과하고, 2021과 2022년에는 0.3건대를 초과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증가가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표4-1 >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기술통계

연도	관측값 수	가정폭력				아동학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6	192	3.95	1.18	0.85	7.25	0.12	0.07	0.00	0.38
2017	192	4.22	0.95	2.53	7.14	0.15	0.08	0.03	0.43
2018	192	3.87	1.04	1.88	9.55	0.17	0.09	0.05	0.44
2019	192	3.68	0.93	1.74	6.97	0.20	0.10	0.02	0.60
2020	192	3.36	0.81	1.54	5.78	0.23	0.12	0.03	0.54
2021	192	3.38	0.78	1.55	5.38	0.35	0.13	0.12	0.71
2022	64	3.28	0.71	1.65	4.92	0.30	0.11	0.10	0.65

주 : 기술통계 수치는 인구 1만명당 수치임

< 그림 4-1 >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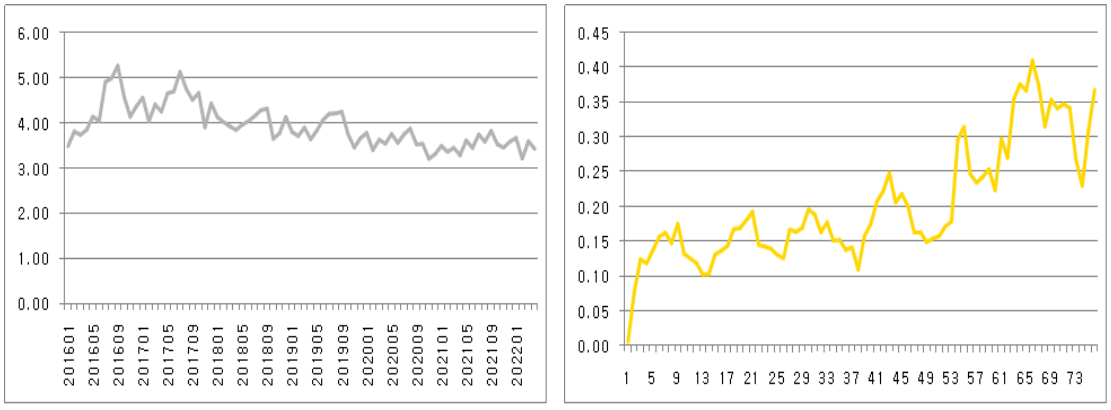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력 신고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6년에 연도별 평균 발생건수가 11건대를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8건대, 2021년과 2022년에는 6건대를 기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감소하였으나, 그간의 감소 추세로 볼 때 기술통계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인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절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발생건수 평균이 2016년부터 2019년의 수치를 모두 밑도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평균 발생건수가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2년의 범위가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적은 1월부터 4월까지인 영향으로 보인다.

< 표4-2 > 폭력·절도 신고 기술통계

연도	관측값 수	폭력				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6	192	11.53	2.57	3.98	19.26	4.16	1.36	1.31	8.98
2017	192	10.96	2.10	6.38	18.01	4.28	1.26	2.18	7.93
2018	192	9.64	1.71	6.40	15.99	3.78	1.17	1.61	8.32
2019	192	9.02	1.71	5.41	15.13	4.01	1.29	1.68	7.90
2020	192	8.03	1.79	4.15	15.38	3.72	1.16	1.74	8.47
2021	192	6.84	1.39	4.15	12.07	3.77	1.03	1.63	6.92
2022	64	6.08	1.46	3.63	11.15	3.54	1.02	1.36	6.50

주 : 기술통계 수치는 인구 1만명당 수치임

< 그림 4-2 > 폭력·절도 신고 추이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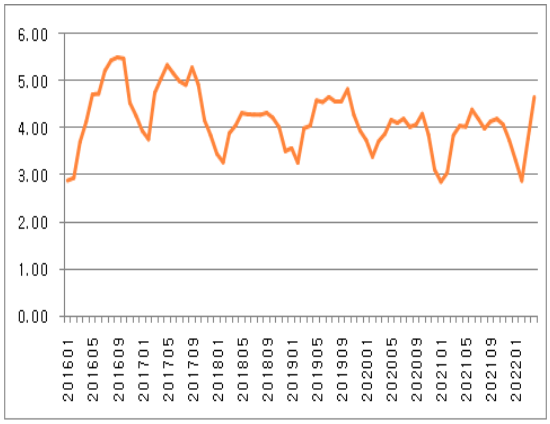

<절도>

재물손괴 신고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2016년에 1.3건대를 기록한 이후 2017년부터 줄곧 1.2건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과 2021년에는 1.2건대, 2022년에는 1.1건대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유행기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22년의 평균 발생건수가 최소인 이유는 절도와 마찬가지로 2022년의 범위가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적은 1월부터 4월까지인 영향으로 보인다.

사기 신고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6년에 0.63건을 기록한 이후 줄곧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에는 3.72건, 2021년에는 5.33건까지 증가한 뒤 2022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5.02건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증가하였으나, 그간의 증가추세로 볼 때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인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 표4-3 > 재물손괴·사기 신고 기술통계

연도	관측값 수	재물손괴				사기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6	192	1.30	0.39	0.52	3.04	0.63	0.59	0.11	3.26
2017	192	1.26	0.41	0.41	2.43	0.79	0.73	0.13	4.02
2018	192	1.23	0.40	0.51	2.31	1.05	1.02	0.14	5.51
2019	192	1.27	0.41	0.48	2.61	1.94	1.57	0.20	9.04
2020	192	1.24	0.37	0.39	2.60	3.72	1.93	0.98	11.71
2021	192	1.24	0.41	0.37	2.73	5.33	1.95	1.56	12.74
2022	64	1.12	0.39	0.36	2.16	5.02	1.77	1.48	9.72

주 : 기술통계 수치는 인구 1만명당 수치임

< 그림 4-3 > 재물손괴·사기 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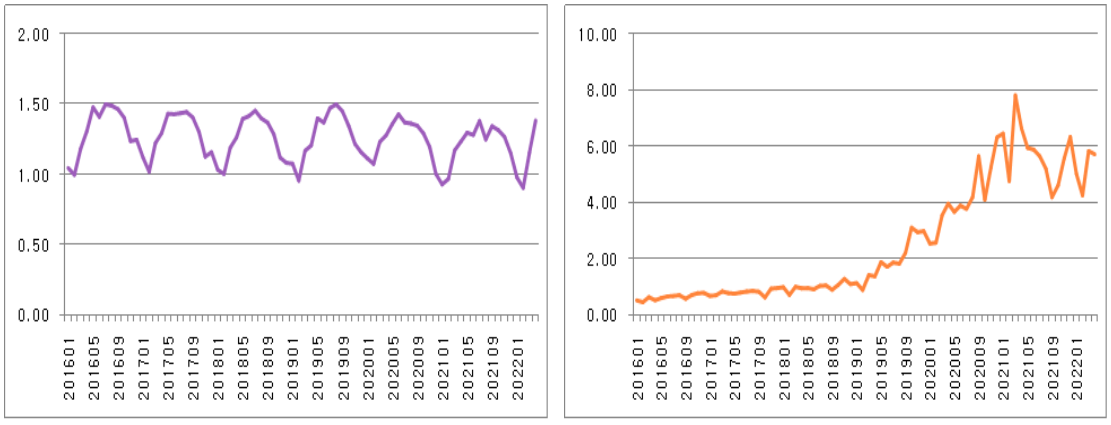

<재물손괴> <사기>

주거침입 신고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에서는 0.2건대를 기록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과 2021년에 0.3건대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다시 0.2건대를 기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하였고, 이는 절도·재물손괴 신고와 마찬가지로 2022년의 범위가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적은 1월부터 4월까지인 영향으로 보인다.

< 표4-4 > 주거침입 신고 기술통계

연도	관측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6	192	0.23	0.15	0.02	0.85
2017	192	0.23	0.15	0.04	1.03
2018	192	0.23	0.17	0.07	1.04
2019	192	0.28	0.18	0.05	1.17
2020	192	0.30	0.19	0.05	1.37
2021	192	0.30	0.18	0.05	1.05
2022	64	0.27	0.15	0.09	0.96

주 : 기술통계 수치는 인구 1만명당 수치임

< 그림 4-4 > 주거침입 신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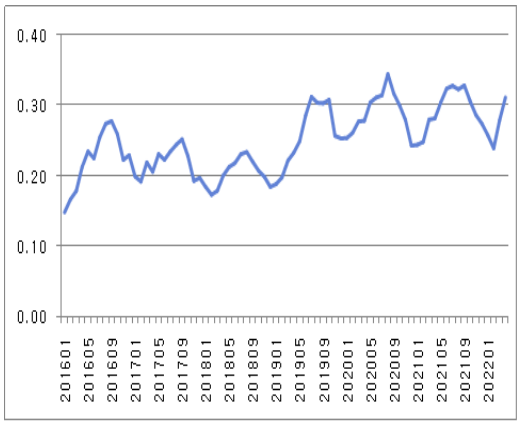

2. 연구모형 1의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등록외국인은 2016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2019년 213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2020년에는 206명, 2021년에는 190명, 2022년에는 188명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4-5 > 등록외국인 기술통계

연도	관측값 수	등록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6	192	189.83	66.31	95.58	305.38
2017	192	192.87	68.02	99.75	330.15
2018	192	202.08	72.78	107.19	372.32
2019	192	213.28	76.34	113.26	386.98

연도	관측값 수	등록외국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20	192	206.49	72.75	112.34	384.70
2021	192	190.16	62.11	109.72	336.99
2022	64	188.67	59.24	111.70	304.73

주 : 기술통계 수치는 인구 1만명당 수치임

고령인구는 2016년 1,411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591명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2020년에는 1,682명, 2021년에는 1,765명, 2022년에는 1,824명을 기록하였다. 반면, 청소년인구는 2016년 1,885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9년 1,727명을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소추세는 계속되어 2020년에는 1,682명, 2021년에는 1,641명, 2022년에는 1,614명을 기록하였다. 고령인구와 청소년 인구의 추세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으로 보인다.

< 표4-6 > 고령인구·청소년 인구 기술통계

연도	관측값 수	고령인구				청소년 인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6	192	1,411.57	309.92	883.82	2,095.24	1,885.27	124.08	1,685.64	2,197.15
2017	192	1,468.55	311.89	933.92	2,153.80	1,835.28	122.03	1,634.84	2,152.77
2018	192	1,526.80	312.17	1,007.30	2,194.05	1,780.46	118.59	1,578.24	2,094.67
2019	192	1,591.62	315.37	1,078.96	2,261.13	1,727.79	114.82	1,532.18	2,032.85
2020	192	1,682.41	321.37	1,164.90	2,354.14	1,682.10	113.19	1,489.65	1,975.82
2021	192	1,765.43	325.21	1,271.48	2,429.06	1,641.37	110.89	1,460.71	1,919.51
2022	64	1,824.02	330.03	1,374.82	2,457.09	1,614.93	109.08	1,443.54	1,874.59

주 : 기술통계 수치는 인구 1만명당 수치임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6년 345명, 2017년 329명을 기록한 후 증가추세로 전환하여 2018년에는 330명, 2019년에는 374명을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415명, 2021년에는 469명, 2022년에는 491명을 기록하여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400명대를 넘어섰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용직이나 단기 일자리 노동자와 같은 서민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황선윤, 2021)하였다.

실업자는 2016년 177명, 2017년 174명을 기록한 후 증가추세로 전환하여 2018년에는 190명, 2019년에는 192명, 2020년에는 201명을 기록하였으나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2021년에는 182명, 2022년에는 180명대를 기록하였다.

< 표4-7 > 기초생활 수급자·실업자 기술통계

연도	관측값 수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6	192	345.25	93.09	150.87	524.38	177.01	50.56	59.01	348.29
2017	192	329.83	87.55	150.03	501.51	174.65	55.18	75.32	346.44
2018	192	330.14	86.12	152.50	521.25	190.49	54.87	74.41	310.00
2019	192	374.20	91.37	193.22	554.30	192.15	54.44	80.40	344.06
2020	192	415.81	96.77	224.45	609.28	201.09	52.59	70.20	362.97
2021	192	469.28	103.17	271.31	672.38	182.44	72.60	52.32	434.59
2022	64	491.97	105.42	298.59	681.56	180.25	41.24	118.13	318.46

주 : 기술통계 수치는 인구 1만명당 수치임

총전입은 줄곧 11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7개년 중 2020년에 최대값(119명), 2022년에는 최소값(110)명을 기록하였다. 총전출도 줄곧 110~120명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총전입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 최대값(120명), 2022년에는 최소값(111명)을 기록하였다. 2022년이 최소값을 기록하는 것은 아마도 절도와 재물손괴 등과 마찬가지로 2022년의 범위가 통상 인구이동이 적은 1월부터 4월까지인 것으로 추정된다.

< 표4-8 > 총전입·총전출 기술통계

연도	관측값 수	총전입				총전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6	192	115.81	19.42	78.31	217.98	115.19	18.47	77.98	190.28
2017	192	111.97	19.35	80.14	207.48	111.98	18.36	77.48	188.37
2018	192	113.35	20.21	63.47	198.89	114.51	18.51	69.88	183.12
2019	192	110.99	17.35	77.43	172.46	112.78	17.35	78.63	171.11
2020	192	119.01	18.72	82.65	175.20	121.05	18.81	87.93	175.14
2021	192	112.10	17.08	81.87	166.97	113.21	17.20	81.74	174.86
2022	64	110.69	18.54	78.41	158.03	111.32	17.59	81.97	155.87

주 : 기술통계 수치는 인구 1만명당 수치임

3. 연구모형 2의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더미변수로 측정된 거리두기 강도는 2020년에는 평균 2.11단계로 첫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3월에 시행되어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영업자제 권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다시 단계가 하향되었다가 연말에 사적모임 5인 이하 가능 조치가 실시되었다. 2021년에는 평균 4.67단계로 2021년에 시행된 가장 강도가 낮은 조치는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가능 조치였으며, 9개월여간 가장 높은 강도로 분류된 사적모임 5인 이하 가능 조치가 지속되었다. 2022년에는 평균 4단계였다. 1월에 사적모임 5인 이하 가능 조치가 시행된 이후 점점 단계가 하향되어 4월에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가능 조치가 시행된 이후 해제되었다. 종합하면 2021년에 가장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확진자수는 2020년 0.761명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6.423명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785.932명을 기록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폭증하였다.

< 표4-9 > 거리두기 강도·확진자 기술통계

연도	관측값 수	거리두기 강도				확진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20	192	2.11	1.80	0.00	5.00	0.76	1.90	0.00	19.02
2021	192	4.67	0.63	3.00	5.00	6.42	8.30	0.29	74.59
2022	64	4.00	0.71	3.00	5.00	785.93	704.37	11.59	2,087.89

주 : 확진자 수는 인구 1만명당 수치임

제 2 절 예측모델링 및 예측결과

1. 예측모델링

먼저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2020년 이후 112신고를 예측하

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112신고를 활용하였다. 예측변수로는 ① 월변수 ② 월^{2}변수 ③ 연도변수로 구성하고 ④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조정계수의 값이 모든 신고유형에 대해 0.7이상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모델링 결과 가정폭력 신고의 경우 예측변수 중에는 월변수와 월^{2}변수, 연도변수, 통제변수 중에는 등록 외국인, 청소년 인구, 기초생활 수급자, 총전입 변수와 상수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중 등록 외국인과 청소년 인구 변수는 가정폭력 신고에 정의 영향, 기초생활 수급자와 총전입 변수는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예측변수 중 월변수 월^{2}변수가 유의하였고, 통제변수 중에는 고령인구, 청소년인구 변수가 유의하였다. 아울러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제변수는 아동학대 신고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신고의 경우 예측변수 중 월변수, 월^{2}변수, 통제변수 중에는 등록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자, 총전입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중 등록 외국인,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자, 총전입 변수는 부의 영향, 청소년 인구는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신고의 경우 예측변수 중 월변수, 월^{2}변수, 연도변수, 통제변수 중에는 고령인구,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자, 총전입 변수와 상수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령인구와 실업자, 총전입 변수는 부의 영향, 기초생활 수급자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재물손괴 신고의 경우 예측변수 중 월변수, 월^{2}변수, 통제변수 중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자, 총전입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통제변수의 회귀계수가 0에 가까워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자, 총전입 변수는 재물손괴 신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 신고의 경우 예측변수 중 월변수, 월^{2}변수, 통제변수 중 등록 외국인, 고령인구, 청소년 인구,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통제변수의 회귀계수가 0에 가까워 통제변수는 주거침입 신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신고의 경우에는 예측변수 중에는 연도변수만 유의하고 통제변수 중에는 등록 외국인, 청소년 인구,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자 변수와 상수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중 등록 외국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변수는 정의 영향, 청소년 인구와 실업자 변수는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사기 신고를 제외하고 모든 신고유형에서 월변수와 월^{2}변수의 회귀계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대부분의 신고유형이 계절성을 띤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제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등록 외국인 변수는 가정폭력과 사기에는 정의 영향, 폭력 신고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인구 변수는 절도 신고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 인구 변수는 주거침입과 사기 신고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가정폭력과 폭력 신고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정폭력과 폭력 신고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절도와 사기 신고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와 총전입 변수는 모든 112신고에 대해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표4-10 > 예측모델링 결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기	재물손괴	절도	주거침입	폭력
Month	0.186*** (6.24)	0.032*** (11.42)	-0.011 (-0.4)	0.161*** (18.35)	0.529*** (16.8)	0.023*** (6.05)	0.878*** (15.47)
$Month^2$	-0.009*** (-4.69)	-0.002*** (-11.88)	-0.000 (-0.19)	-0.011*** (-19.62)	-0.035*** (-16.66)	-0.001*** (-6.86)	-0.056*** (-14.69)
연도	0.349*** (3.08)	0.008 (0.78)	-0.322*** (-3.02)	0.004 (0.14)	0.203* (1.7)	-0.014 (-0.95)	0.093 (0.43)
등록 외국인	0.003* (1.85)	0.000 (1.35)	0.007*** (4.6)	-0.000 (0)	0.001 (0.81)	0.000** (2.36)	-0.010*** (-3.09)
고령인구	0.000 (0.65)	-0.000*** (-4.08)	0.001 (1.12)	-0.000 (-1.06)	-0.002** (-2.14)	-0.000*** (-3.96)	-0.000 (-0.26)
청소년 인구	0.009*** (4.01)	-0.000*** (-3.86)	-0.009*** (-4.57)	-0.000 (0.04)	0.003 (1.26)	-0.001*** (-3.58)	0.016*** (3.64)
기초생활 수급자	-0.006*** (-6.6)	-0.000 (-0.87)	0.010*** (10.85)	0.000*** (3.2)	0.002*** (2.72)	0.000*** (4.36)	-0.003* (-1.7)
실업자	0.000 (1.13)	-0.000 (-1.24)	-0.002*** (-4.13)	-0.000*** (-4.9)	-0.002*** (-4.44)	-0.000* (-1.81)	-0.001* (-1.88)
총전입	-0.005*** (-3.42)	0.000 (0.55)	0.001 (1.33)	-0.000* (-1.8)	-0.003** (-2.1)	-0.000 (-1.15)	-0.024*** (-8.61)
상수	-718.832*** (-3.09)	-14.652 (-0.67)	665.048*** (3.05)	-8.316 (-0.12)	-412.606* (-1.69)	31.349 (1.02)	-204.722 (-0.46)
F value	114.7***	89.57***	171.03***	215.83***	166.1***	169***	160.57***
R-Square	0.7875	0.7431	0.8467	0.8746	0.8429	0.8452	0.8384
Adj R-sq	0.7806	0.7349	0.8418	0.8705	0.8378	0.8402	0.8331

주1 : 괄호 안의 값은 t값 / 지역 더미변수는 생략

주2 :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2. 예측결과

내집단 범죄인 가정폭력은 예측치가 3.06건 관측치가 3.36건, 아동학대 신고는 예측치가 0.19건, 관측치가 0.29건으로 예측치를 넘어선 신고 건수가 접수되었다.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기술통계에서 분석하였듯이 매년 증가추세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그림 4-5 > 가정폭력·아동학대 관측치·예측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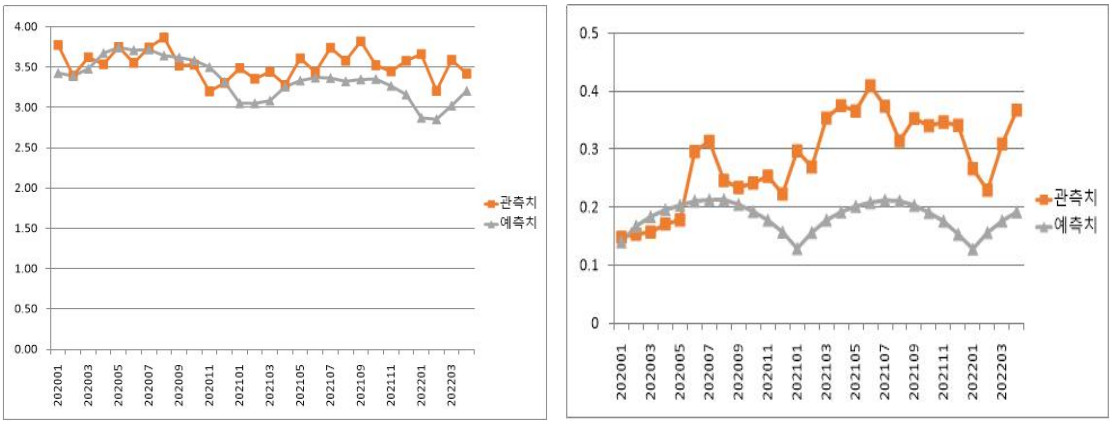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집단 범죄는 사기는 예측치가 2.96건인 반면 관측치는 4.60건, 주거침입 신고는 예측치가 0.27건인데 반해 관측치는 0.30건으로 관측치가 예측치를 상회하였다. 반대로 폭력 신고는 예측치가 7.51건, 관측치는 7.25건, 절도 신고는 예측치가 3.81건, 관측치가 3.71건, 재물손괴 신고는 예측치가 1.27건, 관측치가 1.22건으로 예측치보다 적은 양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결론적으로 외집단 범죄는 신고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사기 신고의 경우 관측치가 예측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는데, 비대면 생활 양식의 확산으로 피싱범죄 신고가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주거침입 신고가 증가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 신고는 행위의 특성상 대부분 가해자가 외집단일 가능성이 높아 폭력, 절도 등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기간 동안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웃 간 분쟁은 증가하였을 수도 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과 2021년

에 층간소음 분쟁이 폭증[29]하였고,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경찰에 주거침입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30]에서 예측치를 상회하는 관측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4-6 > 사기·주거침입 관측치·예측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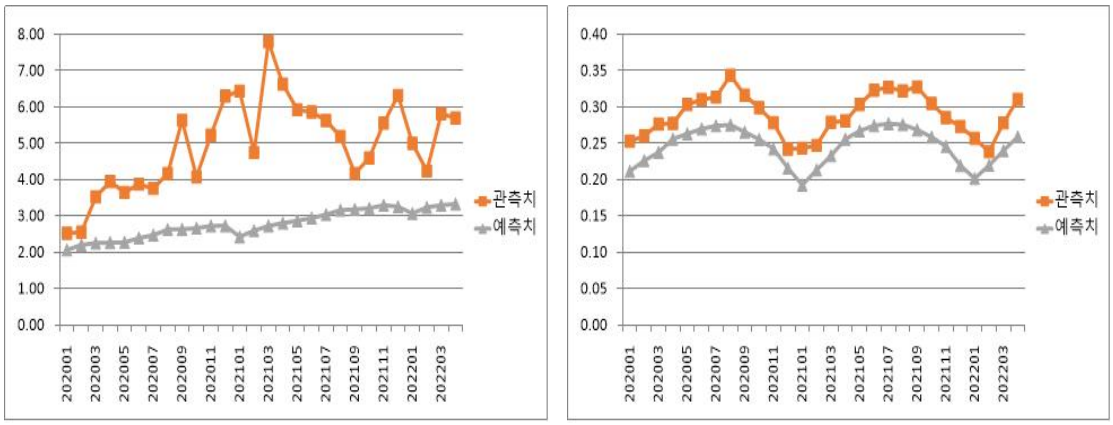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신고는 재물손괴 행위의 특성상 가해자가 동거가족 등이 아닌 외집단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자가 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신고가 이루어진다. 관측치가 예측치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잠재적 가해자와 손괴행위를 감시하는 잠재적 신고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그림 4-7 > 재물손괴 관측치·예측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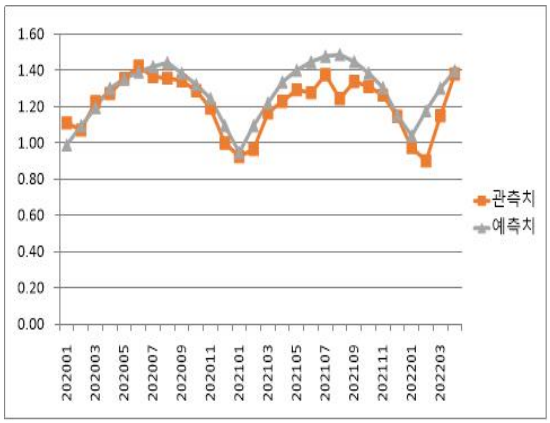

29) 층간소음 분쟁 접수 건수 2018년 29,231건 → 2019년 26,257건 → 2020년 42,250건 → 2021년 46,596건

30) "층간소음 지적에 '주거침입' 신고 남발, 경찰 진땀"(MBN, 2021)

절도의 경우 수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날치기 등 비침입 절도의 경우 유동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함께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침입절도의 경우 장소에 따라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거지를 침입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람들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여 절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반면, 사무실 등을 침입하는 경우 재택근무 등의 확산으로 비어있는 사무실이 증가함에 따라 절도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수도 있다. 다만, 통계에 따르면 절도범죄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유형은 비침입 절도[31]인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수렴할 가능성이 낮아지다보니 관측치가 예측치보다 낮게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폭력 신고는 행위의 특성상 대부분 외집단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온이 상승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늘어나는 등 야외활동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관측치가 예측치보다 낮게 기론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였고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수렴할 가능성이 낮아진 영향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그림4-8 > 절도·폭력 관측치·예측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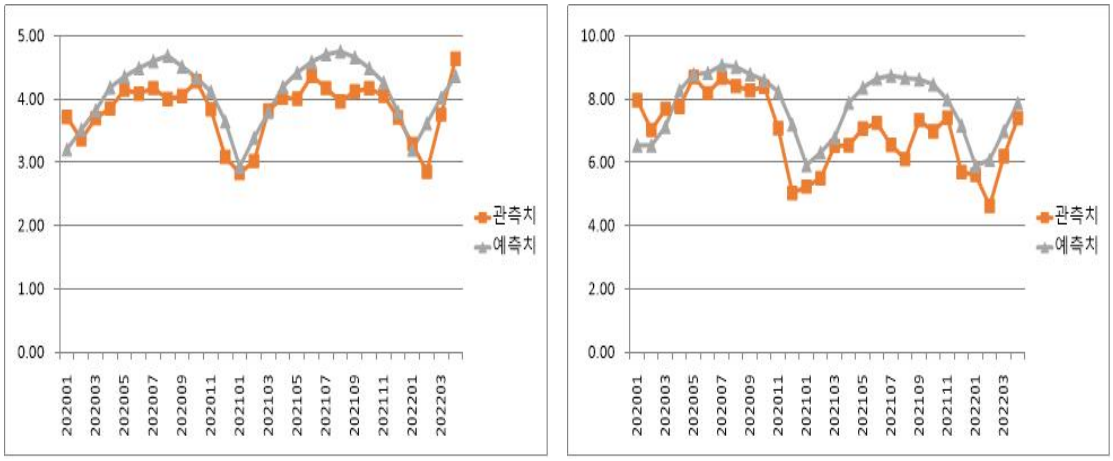

<절도> <폭력>

31) 2019년 총 186,957건 중 침입절도는 30,853건(16.50%), 비침입절도는 130,621건(69.87%), 2020년 총 179,517건 중 침입절도는 25,675(14.30%), 비침입절도는 128,897(71.80%), 2021년 총 166,409건 중 침입절도는 21,026건(12.64%), 비침입절도는 123,042건(73.94%)(경찰청, 2022).

< 표4-11 > 예측결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력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기
관측치	3.36 (0.78)	0.29 (0.13)	7.25 (1.74)	3.71 (1.08)	1.22 (0.39)	0.30 (0.18)	4.60 (2.05)
예측치	3.06 (0.91)	0.19 (0.08)	7.51 (1.94)	3.81 (1.23)	1.27 (0.38)	0.27 (0.15)	2.96 (1.29)
예측치의 95% 신뢰구간	2.04: 4.07	0.09: 0.29	5.58: 9.44	2.74: 4.88	0.97: 1.56	0.14: 0.41	2.00: 3.91
차이	0.30 (0.46)	0.10 (0.10)	-0.26 (1.33)	-0.10 (0.58)	-0.04 (0.21)	0.02 (0.09)	1.64 (1.63)

주 :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

제 3 절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분석 결과

각 신고유형별로 실제 관측치와 연구모형 1에서 도출된 예측치의 차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친 영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실시에 따른 영향과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영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실시에 따른 영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도에 따라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영향은 확진자수가 증가하면 감염을 피하기 위해 방역 정책과는 별개로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으로 판단하여 확진자 변수를 통해 추정하였다.

먼저, 가정폭력 신고의 경우 더미변수 4, 5와 확진자 변수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가 음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1단계와 2단계, 5단계 체계의 1~2.5단계,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가능 조치는 가정폭력 신고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치가 연구모형 1에서 도출된 예측치를 상회하였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은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폭력 신고는 증가할 것이다.)은 기각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더미변수 1, 5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가 모두 음수였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2단계, 5단계 체계의 2단계와 2.5단계,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가능 조치, 사적모임 9인 이하 5인 이상 가능 조치는 아동학대 신고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관측치가 연구모형 1에서 도출된 예측치보다 높게 나타났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은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확진자 변수는 0에 가까워 아동학대 신고의 증감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2(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폭력 신고의 경우 더미변수 중 1, 2, 4와 확진자 변수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더미변수 중 3의 회귀계수는 양수, 5의 회귀계수는 음수로 나타났다. 즉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가능 조치는 폭력 신고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사적모임 5인 이하 가능 조치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영업자제 권고 조치의 영향은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신고는 연구모형 1에서 도출된 예측치보다 적은 신고량이 접수되었고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가능 조치가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가 행해졌던 기간이 본격적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가능 조치가 시행된 기간은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에 해당된다. 2021년 11월 1일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발표되어 생활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이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되었던 시기이다. 또한 2022년 4월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만에 해제되었던 시기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에 부과된 제한이 모두 해제된 시기이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이러한 시기적 특성으로 회귀계수가 양수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설 2-1(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폭력 신고는 감소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절도 신고의 경우 더미변수 3을 제외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와 마찬가지로 확진자 변수는 0에 가까워 확진자의 증감이 절도 신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미변수 1에서는 회귀계수가 양수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1단계, 5단계 체계의 1단계와 1.5단계는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미변수 2, 4, 5에서는 회귀계수가 음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2단계, 5단계 체계의 2단계와 2.5단계, 사적모임 9인 이하 5인 이상 가능 조치, 사적모임 5인 이하 가능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영업자제 권고 조치는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신고도 폭력 신고와 마찬가지로 연구모형 1에서 도출된 예측치보다 적은 신고량이 접수되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1단계, 5단계 체계의 1단계와 1.5단계는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폭력 신고와 마찬가지로 시기적인 특성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은 2020년 5월과 6월, 7월이 해당된다. 이 시기는 사상 초유의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 및 자제 권고가 내려졌다가 제한이 해제된 기간이었다, 또한 봄철 기온의 상승과 함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적인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1단계, 5단계 체계의 1단계와 1.5단계가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설 2-2(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절도 신고는 감소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재물손괴 신고의 경우 더미변수 4와 월변수, 월^{2}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더미변수 4의 회귀계수가 음수라는 점에서 사적모임 9인 이하 5인 이상 가능 조치가 재물손괴 신고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물손괴는 대표적으로 야외에서 내집단이 아닌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로서 연구모형 1에서 도출된 예측치보다 적은 신고량이 관측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의 영향을 미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물손괴 신고는 감소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주거침입 신고의 경우 더미변수 3, 4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가 음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가능 조치와 사적모임 9인 이하 5인 이상 가능 조치는 주거침입 신고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측치가 연구모형 1에서 도출된 예측치를 상회하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거침입 신고는 감소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사기 신고의 경우 더미변수 4와 월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모두 양수였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1단계와 2단계, 5단계 체계의 1~2.5단계, 사적모임 12인 이하 10인 이상 가능 조치, 사적모임 5인 이하 가능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영업자제 권고는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동학대나 절도신고와 마찬가지로 확진자 변수는 0에 가까워 확진자의 증감이 사기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생활 양식이 확산됨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과 같은 신종 사기범죄가 증가한 영향때문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5(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기 신고는 감소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 표4-12 >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분석 결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력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기
더미변수 1	-0.157** (-2.05)	-0.018 (-0.91)	-0.222 (-1.22)	0.279*** (-2.75)	-0.010 (-0.24)	-0.010 (-0.52)	0.890*** (3.38)
더미변수 2	-0.143* (-1.76)	-0.059*** (-2.89)	0.104 (0.54)	-0.219** (-2.03)	-0.026 (-0.59)	0.004 (0.21)	1.086*** (3.89)
더미변수 3	-0.267** (-2.49)	-0.047* (-1.76)	0.430* (1.69)	-0.119 (-0.83)	0.020 (0.36)	-0.047* (-1.67)	0.750** (2.04)
더미변수 4	-0.080 (-0.82)	-0.080*** (-3.25)	-0.381 (-1.64)	-0.627*** (-4.84)	-0.103** (-1.98)	-0.043* (-1.66)	-0.166 (-0.49)
더미변수 5	-0.097 (-1.33)	-0.020 (-1.08)	-0.702*** (-4.04)	-0.304*** (-3.13)	-0.052 (-1.33)	-0.023 (-1.2)	1.704*** (6.78)
확진자	-0.000 (-1.56)	0.000** (-2.06)	0.000 (0.51)	0.000** (2.01)	0.000 (0.59)	0.000 (0.47)	0.001*** (4.34)
월	-0.042** (-2.04)	0.028*** (5.33)	-0.404*** (-8.3)	-0.154*** (-5.65)	-0.037*** (-3.35)	0.002 (0.43)	-0.094 (-1.33)

	가정폭력	아동학대	폭력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기
월²	0.003** (2.36)	-0.001*** (-3.66)	0.020*** (5.67)	0.011*** (5.58)	0.003*** (3.43)	0.000 (0.03)	0.012** (2.31)
연도	0.342*** (9.07)	0.105*** (11.05)	-0.482*** (-5.38)	0.093* (1.86)	-0.032 (-1.6)	0.013 (1.34)	0.317** (2.44)
상수	-691.149*** (-9.07)	-212.469*** (-11.05)	976.358*** (5.39)	-187.984* (-1.86)	65.377 (1.6)	-27.123 (-1.34)	-641.389** (-2.45)
F value	32.25***	22.48***	55.66***	27.15***	19.73***	10.75***	34.69***
R-Square	0.647	0.561	0.7595	0.606	0.528	0.3788	0.663
Adj R-sq	0.627	0.536	0.7459	0.584	0.501	0.3435	0.644

주1 : 괄호 안의 값은 t값 / 지역 더미변수는 생략

주2 : *p<0.1, **p<0.05, ***p<0.01 수준에서 유의함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먼저 내집단 범죄와 외집단 범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확진자 변수의 회귀계수는 0에 가까워 확진자 수의 증감이 112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영향이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내집단 범죄로 분류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신고는 예측치보다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됨으로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범죄가 증가하였다고 추정하였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더미변수의 회귀계수가 모두 음수라는 점에서 더미변수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신고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측치보다 많이 접수된 관측치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없었다.

외집단으로 분류된 범죄의 양상은 신고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주거침입과 사기 신고는 연구모형 1로 도출된 예측치보다 관측치가 많았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해 범죄가 감소할 것이란 가설이 기각되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거침입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사기 신고에는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폭력, 절도, 재물손괴 신고의 경우 연구모형 1로 도출된 예측치보다 관측치가 적었다. 재물손괴 신고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폭력과 절도 신고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별로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더미변수 중 가장 강도가 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더미변수(폭력 신고의 경우 더미변수 3, 절도 신고의 경우 더미변수 1)에서 회귀계수가 양수이고 다른 더미변수의 회귀계수에서는 음수(폭력 신고의 경우 더미변수 5, 절도 신고의 경우 더미변수 2, 4, 5)로 나타났다. 회귀계수가 양수인 이유에 대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직후거나, 국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탓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제 2 절 연구결과 해석

통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야외활동이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모바일 데이터 등 이동성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활동의 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의 특성별로 다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즉 내집단 범죄는 증가하고 외집단 범죄는 감소할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는 일상활동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의 대상인 피해자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경찰 등에 의한 감시 부재의 효과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내집단 범죄는 증가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연구모형 1과 관측치의 비교에서도 드러났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고 접수량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상 가정폭력 신고는 2017년에 증가한 이후 2020년까지 줄곧 감소하다가 2021년에 다시 증가하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가정폭력 신고에 미치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러한 요인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왜곡되어 나타났을 수 있다.

한편, 외집단 범죄는 감소할 것이라 추정하였는데,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의 대상이 한 장소에 수렴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모형 1의 예측치와 관측치의 비교에서 나타났듯이 범죄유형별로 달리 나타났다.

먼저, 주거침입과 사기 신고는 실제 관측치가 연구모형 1의 예측치를 상회하였다. 일상활동이론에 따른 추정과 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주거침입의 경우 만약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분쟁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 이 또한 일상활동이론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이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의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공간에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부의 효과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신고에 미친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층간소음 신고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사기 신고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기 신고와 피싱범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32].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일반 사기 신고가 줄었으나 비대면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피싱범죄가 증가하였다면 일상활동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사이버 범죄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일상활동의 변화가 사이버 범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우, 2021). 실제 112신고 데이터에서도 피싱범죄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이 나타난다. 경찰이 피싱범죄를 112신고 유형으로 신설하여 집계를 시작한 2019년 12월에는 8건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은 월평균 17,033건, 2021년은 월평균 26,760건을 기록하였다. 이와 반면 일반 사기 신고는 2016년 3,201건 → 2017년 4,057건 → 2018년 5,087건 → 2019년 10,003건을 기록하는 등 피싱범죄를 따로 분류하기 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2020년 4,245건 → 2021년 2,913건을 기록하는 등 감소하였다. 피싱범죄가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사기 신고에 포함되어 관리되었을 때는 일반 사기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피싱범죄를 별도로 분류한 이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32) 경찰에서 112신고에서 피싱범죄를 따로 분류한 시점은 2019년 12월부터로, 신고유형을 따로 관리하기 이전에는 일반 사기 신고로 접수되었음

사기신고의 관측치가 예측치를 상회한 것은 피싱범죄 때문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 동안 피싱범죄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폭력, 절도, 재물손괴 신고의 경우 연구모형 1로 도출된 예측치보다 관측치가 적었고 이는 일상활동이론에 적용하였을 때도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다만, 폭력신고의 영우 사적모임 12인 이사 10인 이상 가능 조치의 영향은 정의 영향, 사적모임 5인 이하 가능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영업자제 권고 조치의 영향은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고, 절도 신고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1단계, 5단계 체계의 1단계와 1.5단계는 정의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의 2단계, 5단계 체계의 2단계와 2.5단계, 사적모임 9인 이하 5인 이상 가능 조치, 사적모임 5인 이하 가능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중단·영업자제 권고 조치는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정의 영향을 미친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시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예측에 활용된 연구모형 1은 선형 모형이다. 이 예측 모형은 독립변수의 영향을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예측모델을 구현하기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형성을 가정하므로 예측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실제 데이터에서 선형성 가정은 대체로 근사적으로 만족되며 때로는 근사적으로도 성형성이 가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James et al, 2013).

둘째, 비교적 장기간인 2년 4개월의 기간 동안의 112신고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Google의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평균 소매점·오락시설에서는 -13.24, 대중교통 정류장은 -9.74, 직장은 -7.31, 주거지는 4.43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0년보다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행해진 2021년에는 소매점·오락시설에서는 -5.91, 대중교통 정류장은 -7.32, 직장은 -6.23, 주거지는 4.02를 기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응하거나, 경각심이 느슨해지게 됨에 따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야외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2021년이나 2022년에 행해진 사적모임 제한 등의 영향이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2021년초에 행해진 사적모임 4인 제한의 효과는 이미 1년여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후의 효과이며, 비슷한 논리로 2021년 초의 사적모임 4인 제한의 효과와 2022년 8월의 사적모임 4인 제한의 효과가 같다고 단정지을 순 없는 것이다.

셋째,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12신고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코로나19 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가장 큰 사회적 변화가 코로나19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특정 신고유형의 경우 코로나19만큼 강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2020년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통상 국민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전에는 경찰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112신고가 매우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예측된 112신고 접수량은 0.19이고 실제로 접수된 신고량은 0.29인데, 만약 '정인이 사건'의 영향이 없었다면 실제로 접수된 신고량이 감소하였을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동학대 신고에 미친 영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2020년에는 역대 최장기의 장마가 발생하였다. 2020년 6월 10일에 시작되어 가장 이른 장마를 기록하고, 7월 28일에 종료됨으로써 가장 긴 장마를 기록하였는데, 장마로 인한 야외활동의 감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와 함께 증폭이 되었을 수 있다.

넷째,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월별 112신고 접수자료를 분석하다보니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더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실증연구에 의하면 본 연구의 통제변수에 포함된 요인 외에도 범죄의 영향요인에는 인구밀도, 이혼율, 1인가구 비율, 재산세 등 다양하나 통제변수로 포함시키지 못한 다양한 요인들이 전국단위로 집계되거나 연단위로 집계되어 통제변수로 활용할 수 없었다.

다섯째, 내집단 범죄와 외집단 범죄의 범주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112신고 유형 중 내집단 범죄에 해당하는 유형과 외집단 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내집단과 외집단 범죄의 유형 중 112신고 유형으로 관리되고 있는 범죄만을 분석함으로써 내집단과 외집단 범죄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언급하는 '외집단 범죄'란 재해재난 상황에서 타인에 대한 배척감으로 증가하는 혐오 범죄를 의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외집단 범죄가 증가한다는 보도가 많다(예 : 신종철, 2020). 현재 경찰청에서는 112신고 통계로 혐오 범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의 외집단 범죄에는 혐오 범죄가 포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언급되는 일반적인 외집단 범죄와는 다소 범죄가 다른 문제점이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양상을 112신고 접수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술하였듯이, 112신고 접수 통계는 범죄통계와 비교하여 입건되지 않은 범죄 양상도 파악할 수 있는 등의 강점이 있으나, 112신고 접수 통계와 범죄통계를 함께 활용한다면, 범죄양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통계는 월

별로 발간되지 않고 분기별로 발간되다보니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못하였다. 향후 다른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일곱째, 일상활동이론으로 범죄양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감시자의 부재' 요인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일상활동이론에서 의미하는 감시자란 경찰 등 공식적인 감시자와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적 감시자 모두를 포함한다. 내집단 범죄와 주거침입 신고의 관측치가 예측치를 상회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이웃들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공식적인 감시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는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찰의 순찰활동이 위축되었다거나, 근무인력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 대부분은 사회과학 영역에 대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전체 기간을 범위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당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조망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의 단기적인 변화를 분석한 만큼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함께 활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시작으로 더욱더 광범위한 데이터와 정교한 통계 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으로써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거의 사건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전문가들이 또 다른 감염병의 창궐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첫 번째 사명으로 하는 경찰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안전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학습하여 다음 감염병이 창궐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안전을 보호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범죄 양상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이다.

첫째, 경찰은 피싱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 범죄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과 대비되는 영역이 아닌, 어느새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이버 범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사이버 범죄 대응에 대한 경찰의 전향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사이버 영역에서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투입되는 자원을 오프라인 경찰활동에 준하는 수준만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범죄가 사이범죄와 연계되거나, 사이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사이버수사국에서 사이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부서에 사이버 분야를 지원하는 하위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경찰의 사이버범죄 대응은 '사이버수사국'의 부서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방활동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이버 범죄는 한번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막대하고 원상복구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이 최우선이다.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경찰관이 순찰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와 무질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인력과 자원이 범죄 예방에 투입되는 데 반해, 사이버 영역에서는 이러한 경찰활동의 개념조차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온오프라인 경찰활동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사이버 영역에서 범죄를 미리 차단하고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부처와 기관과도 더욱 긴밀히 협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염병 유행 시기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전염병은 불평등하다'(이강국, 2020)는 명제가 있듯이, 모두가 안전을 위해 실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약자에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각종 공적 서비스가 제한되고 이웃 간 왕래를 통한 자연적인 감시 효과가 약화됨으로써 홀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경우 예측치보다 훨씬 많은 신고량이 접수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찰관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 인지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위험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 경찰활동에 관한 것이다.

첫째, 정확한 통계를 신속하게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 접수자료를 통해 월별 112신고 접수량을 예측하여 실제 관측치와 비교하였다.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12신고뿐만 아니라 정식 입건된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경찰범죄통계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나, 경찰범죄통계는 분기별로 발간하다보니 112신고와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경찰범죄통계는 그간 연도별로 발간되어 오다가 2021년부터 분기별로 발간해오고 있다. 분기별로 발간하게 된 계기는 연도별로 발간하는 경우 최신 범죄 동향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사회 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경찰의 노력은 박수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이 또한 사회의 변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는 시대에 주기가 너무 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죄통계는 경찰이 과학적인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발간 주기를 더욱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제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범죄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가정폭력의 경우 112신고는 2016년 3.95건, 2017년 4.22건, 2018년 3.87건 2019년 3.68건 2020년 3.36건, 2021년 3.38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대체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른 부처의 통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에 따르면, 상담실적은 2020년에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 급증하여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 방문자 수의 경우에도 2021년 방문자 수는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정폭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 표5-1 > 가정폭력 관련 여성가족부 통계

연도	가정폭력 상담실적(건)	해바라기센터 방문자(명)
2016	178,533	5,135
2017	171,975	4,817
2018	219,459	4,147
2019	238,601	4,058
2020	230,578	3,782
2021	263,556	5,184

출처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2021),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2021) 저자 재구성

112신고와 범죄 데이터를 통해서만 치안전략을 수립한다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데이터 분석과 정책이 더욱 긴밀히 연계가 되어야 한다. 현재 수사활동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치안정책에는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지정하였으며, 산하에 치안빅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여 치안분야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당하는 등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는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적 기반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제 치안정책 수립에도 활용하여 경찰행정의 전반에 데이터 기반 경찰활동(Data driven policing)을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여 치안자원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예측치와 관측치의 비교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와 사기의 관측치는 예측치를 대폭 상회하였고, 재물손괴와 절도, 폭력 신고 관측치는 예측치를 하회하였다. 2년 4개월이라는 장기간의 범죄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을 포함한 자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재물손괴와 절도, 폭력 신고가 감소하였다고 담당 부서의 업무가 줄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112신고 통계로는 집계되지 않는 방역당국에 대한 행정응원에 대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 동안 범죄의 변화를 포함하여 새롭게 추가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하는 경우 치안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 참고문헌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8(2)*, 287-320.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한진옥, 신소올, 서수인, 김자영 & 이예지. (2020).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조치의 측정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슈브리핑 제11호. https://ggpi.or.kr/images/issue/issue11.pdf*

경찰청. (2022). *'2021년 경찰범죄통계' p10.*
(2021). *'2020년 경찰범죄통계' p20.*
(2021). *'112접수 매뉴얼'*

기광도. (2007).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분석 -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6(2), 257-290.*

김동근, 윤영진 & 안건혁. (2007).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범죄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42.7 : 155-68.* Web.

김범 & 고길곤. (2020).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슈의 변화와 경험적 근거 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8(4), 1-29.*

김상일 & 이태구. (2010). '도시지역범죄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0 : 1.* Web.

김석영, 이상우, 이소양, 손민숙, 장윤미 & 손지영. (2021).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보험연구원. *이슈보고서 2021-05, pp 53-68.*

김은혜, 장현석, 박준호, 신지희, 홍명기 & 이다영. (2022). '경기도 읍면동 수준에서 코로나 전후의 범죄분포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9.2: 39-69.* Web.

김준영 & 김태성. (2017). ‘정보유출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7(6), 1507-1517.*

김준호 & 이성식. ‘범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적용 및 평가’. *형사정책 7.7 (1995) : 105-25.* Web.

김창보. (2021). ‘인간안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특징과 건강정책의 방향’. *대한공공의학회지 2021 vol 5.*

노성훈 & 탁종연. (2015). ‘112신고통계 개선방향 : 입력항목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7(5): 75-103.*

노세리. (2022). ‘비대면 근무 방식의 확산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2022년 3월호.*

대검찰청. (2015). 대검예규 ‘범죄통계 개선’
(2021). ‘*2020년 범죄분석*’ *p98.*

박한호. (2020). ‘사회적 재난과 범죄현상 분석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범죄 사례와 현상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6권 제2호 69-84.*

서울대학교병원. (2022). ‘*코로나19 백서*’ *pp 6-10.*

신현재. (2022). ‘*정책변동 과정과 근거기반 정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코로나19 통제정책을 중심으로*’(박사학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심윤정, 임지영, 전광희 & 계봉오. (2020).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동 추이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시 연구보고서(2020. 10.). pp 54-61.*

양진석 & 정일훈. (2010). ‘공간계량모형(Spatial Econometrics Model)을 활용한 도시 범죄 발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연구 7 (2010): 191-223.* Web.

오세연 & 김학범. (2021).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기에 따른 분기별 범죄특성 비교 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7(4) 17.4: 674-83.* Web.

윤우석. (2010). ‘경제위기 상황과 범죄발생의 관계 검증 : 1995-2005년 실업과 범죄 시계열자료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3 (2010): 153-89.* Web.

이명우. (2021). ‘코로나19에 따른 사이버 범죄의 변화: 일상활동이론과 단절적 시계열 분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5) (2021): 169-92. Web.*

이창근 & 김의준. (2011). ‘범죄발생률과 경기변동 간의 비대칭 구조와 영향요인 분석’. *경제연구 29.1 : 33-51.* Web.

이현정 & 최재훈. (2019).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사회해체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2(2), 67-86.*

임다울. (2019). *‘부정적 정보의 출처에 따른 내집단 구성원의 차별적 태도’*(석사학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임하늘, 최재용 & 유영재. (2015). ‘성별에 따른 청소년 범죄피해 원인 연구: 자기통제이론, 일상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7(3), 273-298.*

임형진 & 김정림. (2020). ‘코로나19가 범죄에 미친 영향 - 112 신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큐리티 연구 : 233-54.* Web.

전병율. (2015). ‘신종 감염병 감염관리 현황과 대처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9권 5호.*

정경석, 문태헌, 정재희 & 허선영. (2009).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턴 및 범죄발생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1), 12-25.*

정동현. (2018). ‘수도권 도시의 범죄 발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포럼 감성과 문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8 춘계공동학술대회, 17-35.*

제갈돈, 제갈욱 & 송건섭. (1999). ‘경찰력 강화와 범죄억제간 인과관계의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8.2 (1999): 165.* Web.

조철옥. (2008). '현대범죄학'. 서울: 대영.

지상훈. (2020). 'COVID-19로 인한 서울시 생활인구의 변화'. *노동리뷰: 81-84.* Web.

차조일 & 박선웅. (2012). '사회과 주요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쿨리의 1차 집단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4(4), 217-239.*

탁종연. (2006). '범죄통계의 진실성: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5(2), 59-80.*

황지태. (2010). '한국의 치안인력과 범죄율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121-148.*

Akers, Sellers, 민수홍, Sellers & Christine Sharon. (2021). '*범죄학 이론*' / 지은이: 로널드 L. 에이커스, 크리스틴 S. 셀러스 ; 민수홍 [외]공역 (2021). Print.

Deloitte. (2021). 'Covid-19가 몰고 온 소비트렌드'.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insights/deloitte-korea-review/17/kr_insights_deloitte-korea-review-17_07.pdf*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0).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트렌드 변화'.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2552&issus=O&pp=20&datecount=&pg=*

T. Ishihara, 홍명기, 민수홍.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원인에 대한 연구: 사회통제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2(3), 223-259.*

□ 국외 참고문헌

Abrams & David S. (2021). 'COVID and Crime: An Early Empirical Look.'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4: 104344.* Web.

Ben Stickle & Marcus Felson. (2020). 'Crime Rates in a Pandemic : the Largest Criminological Experiment in History'.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5:525-536.*

Cohen, Lawrence E. & Marcus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 588-608.* Web.

Eric Halford, Anthony Dixon, Graham Farrell, Nicolas Malleson & Nick Tillet. (2020). 'Crime and coronavirus: social distancing, lockdown, and the mobility elasticity of crime'. *Crime Science 9, 11.*

Estévez-Soto & P.,R. (2021). 'Crime and COVID-19: Effect of changes in routine activities in mexico city'. *Crime Science. 10(1) doi:https://doi.org/10.1186/s40163-021-00151-y*

Felson, Marcus, Shanhe Jiang & Yanqing Xu. (2020). 'Routine Activity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Burglary in Detroit, March, 2020'. *Crime Science 9.1 : 10.* Web.

George Mohler, Andrea L. Bertozzi, Jeremy Carter, Martin B. Short, Daniel Sledge, George E. Tita, Craig D. Uchida & P. Jeffrey Brantingham. (2020). 'Impact of social distancing during COVID-19 pandemic on crime in Los Angeles and Indianapoli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8 101692.*

James, Witten, Hastie, Tibshirani, James, Gareth, Witten, Daniela, Hastie, Trevor, & Tibshirani, Robert. (2013).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 With Applications in R' / Gareth James...[et Al.]. Print.

Langton, S., Dixon, A. & Farrell, G. (2021). 'Six months in: Pandemic crime trends in england and wales'. *Crime Science 10(1). doi:https://doi.org/10.1186/s40163-021-00142-z*

Matthew P J Ashby. (2020). 'Changes in Police Calls for Service During the Early Months of the 2020 Coronavirus Pandemic'. *Policing 1-19, 2020*, 'Initial evi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crime in the United States'. *Crime science 9:6.*

Rennie Naidoo. (2020). 'A multi-level influence model of Covid-19 themed cybercrime'.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9:3, *306-321.*

Scott SM & Gross LJ. (2021). 'COVID-19 and crime: Analysis of crime dynamics amidst social distancing protocols'. *PLOS ONE 16(4): e0249414. http://lps3.doi.org.libproxy.snu.ac.kr/10.1371/journal.pone.0249414*

Shen, Y., Fu, R. & Noguchi, H. (2021), 'COVID-19's Lockdown and Crime Victimization: The State of Emergency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16: 327-348. http://lps3.doi.org.libproxy.snu.ac.kr/10.1111/aepr.12339*

□ 언론기사 참고자료

강명윤. (2021년 11월 25일). '유엔여성기구 코로나19 이후 가정 안팎서 여성 대상 폭력 심각'. *조선미디어.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0340*

구본흥 & 김규철. (2022년 6월 15일). '범죄 줄었는데 사회적 약자 학대는 오히려 증가'. *내일신문.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262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18일). '우리 일상 모든 것 바꾼 코로나19…1년의 기록'.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1350,* (2020년 5월 4일). '코로나19 한국 방역 성공요인 투평성·열린소통·민관협력'.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72072&pkgId=49500742*

박세환. (2022년 3월 3일). '코로나19 이후 범죄 감소 골목상권이 가장 안전'. *헤럴드경제.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303000579&a=99*

서광호. (2021년 10월 13일). '코로나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감소'. *매일신문*. *http://w3.imaeil.com/page/view/2021101315154768139*

신종철. (2020년 9월 12일). '형사정책연구원, 코로나 범죄동향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 로리더.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4*

이강국. (2020년 6월 1일).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7373.html*

이밝음. (2021년 12월 9일). '코로나 영향에 작년 교통사고·범죄·자살 사망자 모두 감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518121*

'1차집단과 2차집단의 범위'. (2009년 8월 23일). *한겨레*. *https://citation.sawoo.com/ref/guide/apa*

'층간소음 지적에 주거침입 신고 남발, 경찰 진땀'. (2021년 5월 5일). *MBN*. *https://www.mbn.co.kr/news/society/4494985*

한재범 & 나현준. (2022년 4월 20일). '감염병 또 온다…주먹구구 방역 사령탑 일원화 시급'.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295998*

황선윤. (2021년 10월 6일). '기초생활 수급자·우울증 환자 크게 늘어났다…코로나 장기화 탓'. *중앙.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707*

□ 인터넷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

보건복지부. (2020).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

NU_ID=0403&page=243&CONT_SEQ=353664

(2020).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90&CONT_SEQ=359073*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33&CONT_SEQ=354112*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28&CONT_SEQ=354337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91&CONT_SEQ=359025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88&CONT_SEQ=359127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86&CONT_SEQ=359477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83&CONT_SEQ=359748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80&CONT_SEQ=359862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76&CONT_SEQ=360054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71&CONT_SEQ=360241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64&CONT_SEQ=360602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58&CONT_SEQ=361268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53&CONT_SEQ=361522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47&CONT_SEQ=362283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45&CONT_SEQ=362656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56&CONT_SEQ=361388*)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42&CONT_SEQ=362858*
(2021).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33&CONT_SEQ=363349*
(2021).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내일부터 22시까지 연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31&CONT_SEQ=363444*
(2021).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29&CONT_SEQ=363530*
(202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일(2.15)부터 시행’.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29&CONT_SEQ=363538*
(2021).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25&CONT_SEQ=363813*
(2021).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21&CONT_SEQ=364048*
(2021).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더욱 중요’.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21&CONT_SEQ=364071*
(2021).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16&CONT_SEQ=364260*
(2021).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12&CONT_SEQ=365202*

(2021). ‘코로나19 환자 증가세 반전을 위한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09&CONT_SEQ=365409*
(2021). ‘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08&CONT_SEQ=365502*
(2021).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04&CONT_SEQ=365746*
(202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7&CONT_SEQ=366125*
(2021).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간 유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4&CONT_SEQ=366255*
(2021).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3&CONT_SEQ=366338*
(2021).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3&CONT_SEQ=366376*
(2021).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7.15～)’.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2&CONT_SEQ=366435*
(2021). ‘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2&CONT_SEQ=366501*
(202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1&CONT_SEQ=366572*
(2021).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7.27～8.8)’.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0&CONT_SEQ=366594*

(2021).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오늘부터(7.27) 시행’.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90&CONT_SEQ=366619*
(202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87&CONT_SEQ=366758*
(2021).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85&CONT_SEQ=366939*
(2021).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82&CONT_SEQ=367118*
(2021).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76&CONT_SEQ=368065*
(2021).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74&CONT_SEQ=368172*
(202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72&CONT_SEQ=368300*
(2021).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6&CONT_SEQ=368622*
(202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1&CONT_SEQ=368947*
(202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6&CONT_SEQ=369241*
(202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까지 3주 연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

NU_ID=0403&page=54&CONT_SEQ=369760

(2022).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까지 2주 연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9&CONT_SEQ=370057*

(2022).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6&CONT_SEQ=370247*

(2022).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3&CONT_SEQ=370490*

(2022).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3.21.~4.3.)'.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0&CONT_SEQ=370666*

(2022).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24시,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8&CONT_SEQ=370908*

(2022).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6&CONT_SEQ=37107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 '복지통계'.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Iframe.do?datsNo=7&datsClNo=1012&datsClCrit=W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https://jumin.mois.go.kr/*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

'통신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 *https://data.kostat.go.kr/social/moblilePopMoveInfoPage.do*

'국내인구 이동 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4/index.board*

Google. '코로나19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웹사이트]. *https://www.google.com/covid19/mobility/index.html?hl=ko*

Our world in data. ‘Google Mobility Trends: How has the pandemic changed the movement of people around the world?’. *https://ourworldindata.org/covid-mobility-trends*

부록

1. 변수 간 상관분석 : 피어슨 상관 계수(H0 : Rh0 = 0 가정 하에서 Prob > | r |)

피어슨 상관계수, N = 1216

H0: Rho=0 가정하에서 Prob > |r|

	절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	사기	거리두기	확진자	등록 외국인	고령인구	청소년 인구	기초생활 수급자	실업자	총 전입	총전출
절도	1	0.50904	0.27707	0.78623	0.65931	0.57074	-0.04927	-0.134	-0.02149	0.46937	-0.2489	0.13651	-0.33291	-0.15721	0.06657	-0.05925
		<.0001	<.0001	<.0001	<.0001	<.0001	0.0859	<.0001	0.4541	<.0001	<.0001	<.0001	<.0001	<.0001	0.0202	0.0388
가정폭력	0.50904	1	0.28406	0.51575	0.34155	0.5713	-0.03311	-0.23921	-0.06883	0.32204	-0.5563	0.3298	-0.45822	0.13715	0.13068	0.05107
	<.0001		<.0001	<.0001	<.0001	<.0001	0.2487	<.0001	0.0148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75
아동학대	0.27707	0.28406	1	0.35304	0.36306	-0.15544	0.60906	0.51374	0.17261	0.17399	-0.14839	-0.16929	0.01572	0.0423	-0.02664	-0.06327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5839	0.1404	0.3532	0.0633
재물손괴	0.78523	0.51575	0.35304	1	0.70963	0.47899	0.07537	-0.07091	-0.02209	0.30798	-0.15205	0.05648	-0.23866	-0.11612	0.06132	-0.07427
	<.0001	<.0001	<.0001		<.0001	<.0001	0.0086	0.0134	0.4416	<.0001	<.0001	0.0489	<.0001	<.0001	0.0325	0.0096
주거침입	0.65931	0.34155	0.36306	0.70963	1	0.27635	0.09863	0.11237	0.03039	0.49127	0.06061	-0.07289	-0.11549	-0.23054	0.11397	-0.03445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6	<.0001	0.2896	<.0001	0.0346	0.011	<.0001	<.0001	<.0001	0.23
폭력	0.57074	0.5713	-0.15544	0.47899	0.27635	1	-0.43873	-0.57448	-0.18818	0.12684	-0.40973	0.49031	-0.29785	-0.12674	-0.06255	-0.098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292	0.0006
사기	-0.04927	-0.03311	0.60906	0.07537	0.09863	-0.43873	1	0.72854	0.23818	-0.01477	0.17588	-0.45218	0.46204	0.17491	0.0613	0.08488
	0.0859	0.2487	<.0001	0.0086	0.0006	<.0001		<.0001	<.0001	0.6069	<.0001	<.0001	<.0001	<.0001	0.0326	0.0031
거리두기	-0.134	-0.23921	0.51374	-0.07091	0.11237	-0.57448	0.72854	1	0.22359	-0.04346	0.31272	-0.45724	0.44811	0.04657	0.041164	0.05944
	<.0001	<.0001	<.0001	0.0134	<.0001	<.0001	<.0001		<.0001	0.1299	<.0001	<.0001	<.0001	0.1045	0.1468	0.0382
확진자	-0.02149	-0.06988	0.17261	-0.02209	0.03039	-0.18818	0.23818	0.22359	1	-0.02102	0.11788	-0.16554	0.17601	-0.06835	-0.03265	-0.03842
	0.4541	0.0148	<.0001	0.4416	0.2896	<.0001	<.0001	<.0001		0.464	<.0001	<.0001	<.0001	0.0171	0.2552	0.1806
등록 외국인	0.46937	0.32204	0.17399	0.30798	0.49127	0.12684	-0.01477	-0.04346	-0.02102	1	-0.20998	-0.04295	-0.51926	-0.04256	0.22451	0.0164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6069	0.1299	0.464		<.0001	0.1344	<.0001	0.138	<.0001	0.5671
고령인구	-0.2489	-0.5563	-0.14839	-0.15205	0.06061	-0.40973	0.17588	0.31272	0.11783	-0.20998	1	-0.68394	0.61572	-0.29837	-0.25094	-0.24907
	<.0001	<.0001	<.0001	<.0001	0.0346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청소년 인구	0.13651	0.3298	-0.16929	0.05648	-0.07289	0.49031	-0.45218	-0.45724	-0.16554	-0.04295	-0.68394	1	-0.28016	-0.06402	0.20264	0.1795
	<.0001	<.0001	<.0001	0.0489	0.011	<.0001	<.0001	<.0001	<.0001	0.1344	<.0001		<.0001	0.0256	<.0001	<.0001
기초생활 수급자	-0.33291	-0.45822	0.01572	-0.23866	-0.11549	-0.29785	0.46204	0.44811	0.17601	-0.51926	0.61572	-0.28016	1	-0.17777	-0.09451	-0.00586
	<.0001	<.0001	0.5839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8383
실업자	-0.15721	0.13715	0.0423	-0.11612	-0.23054	-0.12674	0.17491	0.04657	-0.06835	-0.04256	-0.29837	-0.06402	-0.17777	1	0.23527	0.35277
	<.0001	<.0001	0.1404	<.0001	<.0001	<.0001	<.0001	0.1045	0.0171	0.138	<.0001	0.0256	<.0001		<.0001	<.0001
총 전입	0.06657	0.13068	-0.02664	0.06132	0.11397	-0.06255	0.0613	0.04164	-0.03265	0.22451	-0.25094	0.20264	-0.09451	0.23527	1	0.91958
	0.0202	<.0001	0.3532	0.0325	<.0001	0.0292	0.0326	0.1468	0.255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총 전출	-0.05925	0.05107	-0.05327	-0.07427	-0.03445	-0.09801	0.06488	0.05944	-0.03842	0.01643	-0.24907	0.1795	-0.00586	0.35277	0.91958	1
	0.0388	0.075	0.0633	0.0096	0.23	0.0006	0.0031	0.0382	0.1806	0.5671	<.0001	<.0001	0.8383	<.0001	<.0001	

Abstract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due to COVID-19 on in-group and out-group crim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Focusing on Routine Activity Theory and Police Report -

Yoon Changju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crime patterns were divided into in-group and out-group crimes during the period when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to prevent COVID-19, and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were analyzed.

Despite media reports and public perception that crime patterns may have changed due to social distancing, empirical studies on this are lacking. Overseas,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published on changes in short-term crime pattern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y at home order, but there are no studies targeting the entire period of social distancing. In addition, there are very few empirical studies on changes in crime in Korea.

In this study, we predicted the number of police calls from January 2020 to April 2022, assuming that COVID-19 would not have been prevalent through the police call data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19. This was compared with the actually observed police report data, and the effect of social distancing was analyz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panel data, police report received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rom January 2016 to April 2022,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case of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classified as suspected crimes, more reports were received than expected, but it was found that social distancing measures had a negative effect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result may be due to the fact that various factors that affected the increase or decrease of domestic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children (e.g., 'Jung In-i incident', etc.) were not considered.

Out-group crimes showed different patterns depending on the reporting type. First, more reports of home invasion and fraud were received than expected. In the case of reports of home invasions, social distancing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For this effect, as with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various factors other than social distancing were not considered for this effect. For example, some media outlets say that most of the recent housing intrusion reports are due to noise conflicts between floors, but the increase in social interest in noise between floors has not been taken into account. On the other hand, fraud reporting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In the case of fraud reports, it can be interpreted that various phishing crimes increased due to the spread of non-face-to-face lifestyle during the period of social distancing.

Next, in the case of reports of violence, theft, and property damage, fewer reports than expected were received. It was found that social distancing had a negative effect on property damage reports. Given that most property damage is caused by out-groups, it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social distancing reducing people's outdoor activities and lowering the possibility of contact with out-groups. On the other hand, in reporting violence and theft, the stage estimated to be the weakest among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social distancing stage variables (In the case of reporting violence, measures to restrict private gatherings from less than 12 to more than 10 people, and in the case of reporting theft, social distancing step 1 of the 3-step system, step 2 and 2.5 of the 5-step system), were found to be positive. and ot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social distancing measures(In the case of reports of violence, measures to allow private gatherings of up to 5 people, measures to recommend suspension of business of entertainment facilities, and in the case of reports of theft, steps 2 of the 3-step social distancing system, steps 1 and 1.5 of the 5-step system Steps, restrict private gatherings from less than 9 to more than 5, measures to allow private gatherings of 5 or less, and recommendations to suspend or refrain

from operating entertainment facilities, etc.)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Regarding these conflicting effect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elatively lowest intensity of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in each report type was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high-intensity social distancing or when social distancing was relaxed, such as implementing a phased daily recovery plan in the country. Regarding the negative impact of other social distancing measures, it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social distancing lowering the possibility that potential perpetrators and victims of violence and theft converge in the same space and time.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crime for 2 years and 4 months from January 2020 to April 2022. By analyzing relatively long-term changes, there may be limitations such as diluting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or failing to measure the effects of people's loosened alertness. Neverthel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looked at changes in crime and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for the entire period of social distancing. If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are used together, it will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on crime more in-depth. And In the event of an outbreak of another infectious disease in the future, it will be able to provide insight to the police in predicting changes in crime more scientifically and responding effectively

keywords : COVID-19, Social distancing, Police report, In-group crime, Out-group crime, Routine activity theory

Student Number **: 2012-22022**